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 | | | | |
|---|---|---|---|---|
| ■ | 일 | 반 | 회 | 계 |
| ■ | 특 | 별 | 회 | 계 |
| ■ | 기 | | | 금 |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제1장 개 요

I. 총 괄	1
1.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규모	1
2. 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	2
II. 세입세출예산안	4
1. 일반회계	4
1) 세입예산안	4
2) 세출예산안	5
(1) 총괄	5
(2) 인건비	6
(3) 기본경비	6
(4) 주요사업비	7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3
1) 세입예산안	23
2) 세출예산안	23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
1) 세입예산안	24
2) 세출예산안	24

Ⅲ. 기금운용계획안 25

- 1. 보훈기금 25
 - 1) 수입 운용계획안 25
 - 2) 지출 운용계획안 26
-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8
 - 1) 수입 운용계획안 28
 - 2) 지출 운용계획안 29

Ⅳ. 성과계획서 30

- 1. 임무와 비전 30
- 2. 목표 및 과제 현황 30

제2장 검토의견

I. 총괄 33

- 1.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33
- 2. 성과보고서 48
 - (1) 성과달성률 저조 50
 - (2) 성과계획서와 다른 성과지표 실적 측정 및 측정기간 개선 필요 54
 - (3) 프로그램 성과와 인과관계가 낮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56
- 3.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및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세부사업 구조변경 필요 58
 - (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59

(2)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63
4. 부대의견 조치결과	66

II. 일반회계 75

[세입] 75

1. 건물대여료	75
(1) 수납액 증가를 반영한 세입 증액 필요	75
(2) 직원 교육 강화 필요	77
2. 기타재산이자수입: 독립기념관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 반납 지연 문제	80
3. 징계부과금: 과거 징수실적을 고려한 수입계획안 계상 필요	83
4. 기타경상이전수입: 보훈급여금 과오급 수납률 제고 및 발생 축소 노력 필요	86
5. 기타잡수입: 기념관 수입 세입 계상 필요	91

[세출] 94

1. 보상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94
2. 생활조정수당: 법 시행일에 따른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99
3. 등록관리: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구매 수요 산정 필요	104
4.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109
(1)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내실있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10
(2)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선정 기준 마련과	

절차 준수 필요	114
5. 교통시설 이용지원: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17
6. 보훈병원 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123
7. 위탁병원 진료	129
(1) 위탁병원 지정 절차 지연 개선 필요	130
(2) 재지정 위탁병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33
8. 보철구 지급	135
(1)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 집행실적 고려 적정 지원인원 산정 필요 ...	135
(2)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마련 필요	139
9. 제대군인 의료지원: 미지급금 정산 등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42
10.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146
11.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150
(1)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진행 진도를 고려한 예산 감액 필요	151
(2)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진행 진도를 고려한 예산 감액 필요	155
12. 현충시설 건립: 독립의 전당 조성사업 추진일정 지연을 감안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57
13.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 ‘LA 홍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사업 관리 철저	165
14. 현충시설 관리·운영사업: 집행 부진 추세를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170

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재고 보유량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75
16.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국립이천호국원	180
(1) 중복 편성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181
(2) 사업계획 수립 전 사전 절차 개선 필요	184
17.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비 예산: 업무 시행지침에 반하는 피복비 단가 산정 개선 필요	186
18. 국립묘지 조성: 국립횡성호국원 조성공사가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192
19.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예산 감액 규모 과다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	197
20.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전직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필요 ..	201
21.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 빠른 사업 진행 필요 ..	210
22.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214
(1) 후손교류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지양 필요	215
(2) 후손 장학사업의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액 조정 필요	218
(3) 성과지표 추가 필요	220
23. 송무지원: 패소 원인 분석 등 대책 강구 필요	223

Ⅲ. 보훈기금 229

1.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229
(1) 국가보훈부의 관리·운영 책임 강화 필요	231
(2) 일회성 프로그램 지양 필요	233
2.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235
3.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242
(1)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245
(2)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누적 해소 필요	247
 IV.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249
[수입]	249
1. 토지매각대: 매각 부진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 필요 등	249
[지출]	253
1.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253
(1) 대상인원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254
(2) 지원금 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 검토 필요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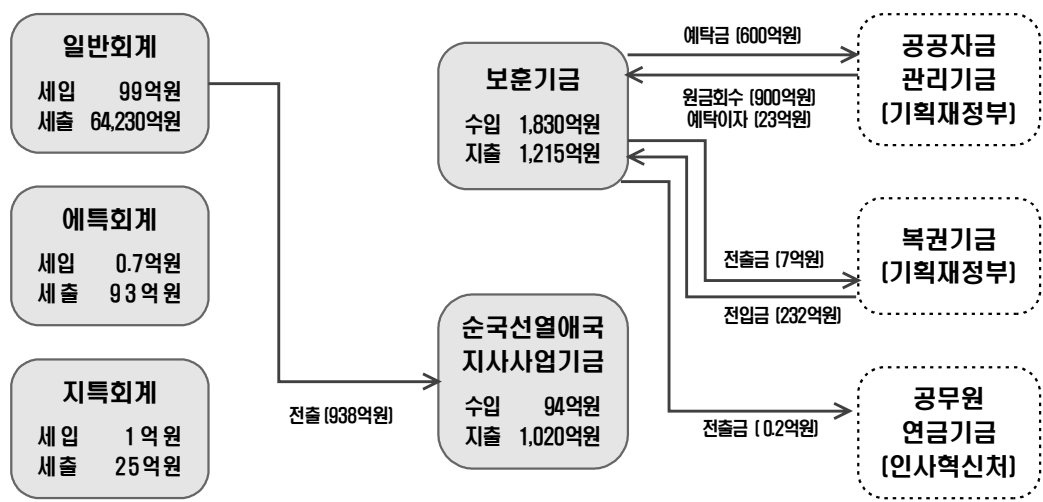
제1장 개 요

Ⅰ. 총 괄

1.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규모

-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의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6,582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3.3% 증가함.
-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4,23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억원, 보훈기금 1,215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20억원임.

< 총지출 6조 6,582억원 >



2. 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

- 2026년도에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2026년도 중점과제 >

-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 및 복지 강화
 - 보훈보상·취업(生), 요양(老), 보훈의료(病), 국립묘지 안장(死)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는 보훈문화 조성사업 추진
 - 독립·호국·민주정신을 국민적·역사적 자산으로 기억·보전
-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 실현,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국가보훈부 재원의 상당 부분은 보훈보상금, 수당, 수시보상금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80.2%)에 집중되어 있고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14.2%)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첨단화된 의료 인프라 구축,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음.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1.4%)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 발굴·포상, 수요자 중심 국립묘지 안장지원 등 예우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0.6%)을 위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참전군인에 대한 각종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3.6%)하기 위해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52,308	80.2
☐ 전략목표Ⅱ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9,235	14.2
☐ 전략목표Ⅲ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944	1.4
☐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381	0.6
☐ 전략목표Ⅴ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58	3.6
합 계	65,226	100

II.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0.2% 감소한 98억 4,600만원이 편성됨.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국립묘지 구내식당 임대료 등으로 2025년 대비 14.2% 증가한 7억 6,500만원이고, 경상이전수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금 등으로 2025년 대비 1.0% 감소한 87억 300만원이며,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은 기념관 주차장 수입 등으로 2025년과 동일한 3억 6,500만원이며, 관유물 매각대는 차량 매각대 등으로 2025년 대비 62.9% 감소한 1,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합 계	9,861	9,846	△15	△0.2
□ 재산수입	670	765	95	14.2
- 토지대여료	65	66	1	1.5
- 건물대여료	94	98	4	4.3
- 기타재산이자수입	511	601	90	17.6
□ 경상이전수입	8,791	8,703	△88	△1.0
- 과태료	88	11	△77	△87.5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변상금	23	12	△11	△47.8
- 위약금	28	28	-	-
-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8,652	-	-
□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365	365	-	-
- 면허료 및 수수료	3	3	-	-
- 기타잡수입	362	362	-	-
□ 관유물 매각대	35	13	△22	△62.9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35	-	-

2)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3.3% 증가한 6조 5,167억 4,8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309,226	6,516,748	207,522	3.3
□ 국가보훈부 운영	6,216,643	6,422,994	206,351	3.3
- 인건비	106,652	113,166	6,514	6.1
- 기본경비	12,375	12,735	360	2.9
- 주요사업비	6,097,616	6,297,093	199,477	3.3
□ 내부거래(기금전출)	92,583	93,754	1,171	1.3

※ 총계기준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운영 예산안은 내부거래를 제외한 6조 4,229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25년 대비 각각 65억 1,400만원(6.1%), 3억 6,000만원(2.9%)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994억 7,700만원(3.3%)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예산안은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기금전출 예산으로 2025년 대비 11억 7,100만원(1.3%) 증액 편성되었음.

(2) 인건비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5억 1,400만원(6.1%) 증가한 1,131억 6,600만원이 편성됨.
이는 본부 및 소속기관(보훈심사위원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개 지방보훈청, 21개 보훈지청, 12개 국립묘지) 공무원 등 인건비임.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06,652	113,166	6,514	6.1
□ 보수(110-01)	103,123	109,884	6,761	6.6
□ 기타직보수(110-02)	2,718	2,403	△315	△11.6
□ 연가보상비(110-05)	811	879	68	8.4

(3) 기본경비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6,000만원(2.9%) 증가한 127억 3,5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2,374	12,734	360	2.9
□ 인건비(110)	184	199	15	8.2
□ 운영비(210)	9,136	9,452	316	3.5
□ 여비(220)	1,655	1,672	17	1.0
□ 업무추진비(240)	477	473	△4	△0.8
□ 직무수행경비(250)	812	820	8	1.0
□ 보전금(310)	29	32	3	10.3
□ 민간이전(320)	65	70	5	7.7
□ 유형자산(430)	16	16	-	-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994억 7,700만원(3.3%) 증가한 6조 2,970억 9,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97,616	6,297,093	199,477	3.3
○ 보훈심사및보상	5,099,473	5,218,026	118,553	2.3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의료복지	668,765	769,324	100,559	15.0
○ 생활안정지원	28,952	27,007	△1,945	△6.7
○ 보훈문화	92,530	95,514	2,984	3.2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17,699	94,361	△ 23,338	△ 19.8
○ 제대군인지원	34,860	35,331	471	1.4
○ 보훈행정	19,056	19,076	20	0.1

□ 보훈심사및보상(1100)

- 보훈심사및보상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수당·수시 보상금과 같은 보훈급여금과 등록·신체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2.3% 증가한 5조 2,18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가장 비중이 큰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 지표를 감안 5.0% 인상하고, 상이7급 보상은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1.5% 인상 하였으며 재해부상군경7급 부양가족수당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3% 증가한 3조 7,175억 500만원이 편성됨.
- 상시·수시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자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8.1%)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3% 감소한 527억 2,400만원임.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단가는 동결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은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8.9% 증가한 1,092억 8,700만원임.

- 6·25자녀수당은 보상금 인상률과 연계, 단가를 5.0% 인상하고, 신규 승계유자녀는 격차 해소를 위해 7.3%를 추가 인상 반영하였으며, 인원 감소분(△7.9%)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1% 감소한 4,198억 300만원임.
- 고엽제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3.1%)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8% 증가한 3,218억 2,400만원임.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월 지급액을 3만원 인상하고, 각각 인원 변동분(△19.8%, △14.0%, △10.8%)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5.1% 감소한 391억 4,600만원, 8.3% 감소한 5,380억 9,900만원, 4.9% 감소한 13억 6,700만원임.
- 유공자(유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2025년과 동일한 96억 9,400만원이며,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 등이 복무 중 사망·상이 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도 2025년과 동일한 1억 7,800만원임.
- 보상금 지급관리는 보상금 지급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례연구 등 경비로 2025년 대비 5.2% 감소한 9,200만원임.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 및 상이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2.0% 감소한 15억 9,800만원임.
- 등록관리는 무인민원발급기 보훈민원증명 발급시스템 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4.3% 증가한 41억 4,500만원임.

- 고엽제환자 검진은 검진인원 및 집행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9.6% 감소한 24억 1,200만원, 고엽제 역학조사는 제7차 역학조사 완수를 위한 마지막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9.8% 감소한 1억 5,2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심사및보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심사및보상	5,099,473	5,218,026	118,553	2.3
○ 보훈보상금	3,562,819	3,717,505	154,686	4.3
- 보상금	3,562,819	3,717,505	154,686	4.3
○ 수당	1,518,748	1,482,250	△36,498	△2.4
- 간호수당	54,513	52,724	△1,789	△3.3
- 생활조정수당	84,754	109,287	24,533	28.9
- 6·25자녀수당	428,693	419,803	△8,890	△2.1
- 고엽제수당	316,267	321,824	5,557	1.8
- 무공영예수당	46,117	39,146	△6,971	△15.1
- 참전명예수당	586,966	538,099	△48,867	△8.3
- 4·19혁명공로수당	1,438	1,367	△71	△4.9
○ 수시보상금	9,969	9,964	△5	△0.1
- 사망일시금	9,694	9,694	-	-
- 재해보상금	178	178	-	-
- 보상금지급관리	97	92	△5	△5.2
○ 보훈심사	1,631	1,598	△33	△2.0
- 보훈심사위원회운영	1,631	1,598	△33	△2.0
○ 등록심사	6,306	6,709	403	6.4
- 등록관리	3,336	4,145	809	24.3
- 고엽제환자검진	2,667	2,412	△255	△9.6
- 고엽제역학조사	303	152	△151	△49.8

□ 보훈단체지원(1200)

- 보훈단체지원 사업은 보훈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6.0% 증가한 384억 5,4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은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 복지지원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7% 증가한 379억 5,400만원임.
- 지방보훈회관 건립은 2025년 대비 75.0% 감소한 5억원임.

〈 2026년도 보훈단체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4,281	37,954	3,673	10.7
- 지방보훈회관건립	2,000	500	△1,500	△75.0

□ 보훈의료복지(2100)

-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병원 진료비 인상과 준보훈병원 도입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5.0% 증가한 7,693억 2,400만원이 편성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시내버스 정산 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3.0% 증가한 217억 7,600만원임.
- 보훈병원 진료는 진료비 인상 및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4.8% 증가한 4,504억 8,300만원임.
- 위탁병원 진료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위탁병원 확대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2% 증가한 2,694억 8,600만원임.
- 보철구 지급은 2025년과 동일한 60억 2,600만원임.
-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제대군인 보철구 사업을 국가유공자 보철구 사업과 통합 운영으로 2025년 대비 2.7% 감소한 23억 100만원임.
- 종합재활체육센터 관리·운영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체육지원 프로그램 다각화로 인한 경비 절감으로 2025년 대비 2.9% 감소한 25억 9,900만원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서관동 증축 4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9.7% 증가한 67억 2,100만원임.

-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은 중앙 및 광주보훈병원 시설확충 3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30.0% 증가한 99억 3,2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의료복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의료복지	668,765	769,324	100,559	15.0
○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21,776	11,047	103.0
-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21,776	11,047	103.0
○ 의료지원	649,800	728,296	78,496	12.1
- 보훈병원진료	392,296	450,483	58,187	14.8
- 위탁병원진료	249,113	269,486	20,373	8.2
- 보철구지급	6,026	6,026	-	-
- 제대군인의료지원	2,365	2,301	△64	△2.7
○ 의료환경개선	8,236	19,252	11,016	133.8
-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2,678	2,599	△79	△2.9
-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4,490	6,721	2,231	49.7
-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1,068	9,932	8,864	830.0

□ 생활안정지원(2200)

- 생활안정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자립능력과 생활안정 향상을 위한 교육·취업지원 사업으로, 2025년 대비 6.7% 감소한 270억 7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중 수업료면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0% 감소한 224억 500만원이며, 학습보조비는 지원인원 현실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3.1% 증가한 15억 2,800만원임.
- 취업지원은 취업능력 개발비 인상, 직업상담사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9.1% 증가한 30억 7,400만원임.

〈 2026년도 생활안정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생활안정지원	28,952	27,007	△1,945	△6.7
○ 교육지원	26,134	23,933	△2,201	△8.4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수업료면제)	24,893	22,405	△2,488	△10.0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 등)	1,241	1,528	287	23.1
○ 취업지원	2,818	3,074	256	9.1
- 취업지원	2,818	3,074	256	9.1

□ 보훈문화(3100) 및 회계기금간거래(8400)

- 보훈문화 및 회계기금간거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2.2% 증가한 1,892억 6,800만원이 편성됨.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사업 이관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7.7% 증가한 350억 9,000만원임.
- 보훈문화 조성은 국외 사적지탐방 확대, 보훈문화관 건립 연차소요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7.8% 증가한 166억 1,700만원임.
-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은 사업 효율화를 통한 참여형 게임 등 예산 감액으로 2025년 대비 29.9% 감소한 42억 1,000만원임.
- 현충시설 건립은 독립의 전당 건립 연차소요를 반영하고 종료사업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0% 감소한 46억 5,900만원임.
- 현충시설 관리는 LA홍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사업 연차소요, 노후 현충시설 안전진단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8.3% 증가한 102억 9,900만원임.
- 기념관 관리운영은 기념관 직원 인건비 처우개선과 백범김구기념관 노후시설 교체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0% 증가한 84억 1,100만원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은 유사·중복 사업인 국외사적지 탐방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7% 감소한 87억 9,200만원임.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은 2025년과 동일한 7억 1,600만원임.
- 보훈기념행사는 정부기념행사 현실화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5% 증가한 40억 5,400만원임.

- 호국보훈의달 행사는 소속기관 행사비 및 민간단체 계기행사 지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8% 감소한 10억 800만원임.
-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은 광복 80주년 계기 행사 종료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0% 감소한 16억 5,800만원임.
- 순애기금 전출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25년 대비 1.3% 증가한 937억 5,4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문화 사업 및 회계기금간거래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합 계	185,113	189,268	4,155	2.2
□ 보훈문화	92,530	95,514	2,984	3.2
○ 독립기념관	27,479	35,090	7,611	27.7
-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27,479	35,090	7,611	27.7
○ 보훈문화진흥	20,108	20,827	719	3.6
- 보훈문화조성	14,104	16,617	2,513	17.8
-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지원	6,004	4,210	△1,794	△29.9
○ 현충시설	28,709	32,161	3,452	△12.0
- 현충시설건립	4,756	4,659	△97	△2.0
- 현충시설관리	6,944	10,299	3,355	48.3
- 기념관관리운영	7,785	8,411	626	8.0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운영	9,224	8,792	△432	△4.7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 기념사업	16,234	7,436	△8,798	△54.2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716	716	-	-
- 보훈기념행사	3,954	4,054	100	2.5
- 호국보훈의달행사	1,130	1,008	△122	△10.8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1,745	1,658	△87	△5.0
- 광복80주년기념사업	8,689	-	△8,689	순감
□ 회계기금간거래	92,583	93,754	1,171	1.3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출금	92,583	93,754	1,171	1.3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3200)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예우 지원, 12개 국립묘지 관리 및 3개 국립묘지 조성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19.8% 감소한 943억 6,100만원이 편성됨.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은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전산화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5.7% 증가한 26억 1,500만원임.
-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는 공적 전수조사 연구원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1% 증가한 28억 1,400만원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실적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7.4% 감소한 60억 400만원임.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은 디지털 미디어월 영상 제작,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7.2% 증가한 12억 8,600만원임.
- 국립서울현충원은 상수도관 교체사업 종료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6.7% 감소한 105억 7,400만원임.
- 국립대전현충원은 노후 순환버스 교체, 원내 기와 보수공사 연차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3% 증가한 119억 5,900만원임.
- 민주묘지(3개소)는 유가족과 참배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경비 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4% 증가한 27억 4,400만원임.
- 국립호국원(6개소)은 묘역 확충사업 완료(영천·임실·이천)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1.4% 감소한 241억 6,800만원임.
- 국립신암선열공원은 공무원 근로자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1% 증가한 7억 2,300만원임.
- 국립묘지 조성은 연천현충원 및 횡성·장흥호국원 조성 연차소요와 충남권 국립묘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7% 증가한 314억 7,4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17,699	94,361	△23,338	△19.8
○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예우	10,957	11,433	476	4.3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795	2,615	820	45.7
-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2,678	2,814	136	5.1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6,484	6,004	△480	△7.4
○ 국립묘지조성및관리	106,742	82,928	△23,814	△22.3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937	1,286	349	37.2
- 국립서울현충원	11,333	10,574	△759	△6.7
- 국립대전현충원	11,352	11,959	607	5.3
- 민주묘지(3개소)	2,604	2,744	140	5.4
- 국립호국원(6개소)	49,759	24,168	△25,591	△51.4
- 국립신암선열공원	708	723	15	2.1
- 국립묘지조성	30,049	31,474	1,425	4.7

□ 제대군인지원(4100)

- 제대군인지원은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국제교류협력, 참전 관련 기념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1.4% 증가한 353억 3,100만원이 편성됨.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행사 등 통합 개최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2.0% 감소한 152억 3,300만원임.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최근 3년('22~'24) 평균 신청 인원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9.8% 증가한 95억 8,300만원임.
- 국제보훈교류협력은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3% 증가한 82억 5,300만원임.
- 참전기념행사는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제작 및 수여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9% 증가한 22억 6,200만원임.

〈 2026년도 제대군인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제대군인지원	34,860	35,331	471	1.4
○ 제대군인생활안정	24,692	24,816	124	0.5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17,310	15,233	△2,077	△12.0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382	9,583	2,201	29.8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10,168	10,515	347	3.4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7,991	8,253	262	3.3
- 참전기념행사	2,177	2,262	85	3.9

☐ 보훈행정(7100)

- 보훈행정은 청관사 임차 및 시설개선, 기관운영 등 일반행정, 정보화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0.1% 증가한 190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사무 및 민원환경 개선은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준공에 따른 노후 집기류 교체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3.2% 증가한 10억 200만원임.
- 송무 지원은 의학자문·신체감정료 단가 인상 및 패소사건 소송비용 현실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0.7% 증가한 5억 6,000만원임.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청년인턴 인원 조정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1% 감소한 12억 3,200만원임.
- 보훈정책홍보는 모두의 보훈 확산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7.4% 감소한 7억 8,400만원임.
- 이동보훈팀 운영은 공무원 근로자 처우개선과 이동보훈차량 임차료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2.0% 증가한 22억 9,000만원임.
- 나라사랑신문 발간은 우편요금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8% 증가한 22억 1,400만원임.
- 정보화사업은 통합보훈시스템 등 보훈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4.0% 감소한 42억 5,3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행정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 보훈 행정	19,056	19,076	20	0.1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236	5,486	250	4.8
- 청사유지보수	1,302	1,302	-	-
- 사무및민원환경개선	752	1,002	250	33.2
- 관사임차	3,182	3,182	-	-
○ 일반행정	4,932	4,596	△336	△6.8
- 송무지원	398	560	162	40.7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340	1,232	△108	△8.1
- 보훈정책개발	1,278	1,161	△117	△9.2
- 사회복지무요원운용	836	859	23	2.8
- 보훈정책홍보	1,080	784	△296	△27.4
○ 보훈서비스지원	4,456	4,741	285	6.4
- 이동보훈팀운영	2,044	2,290	246	12.0
- 보훈상담센터운영	237	237	-	-
- 나라사랑신문발간	2,175	2,214	39	1.8
○ 정보화	4,432	4,253	△179	△4.0
- 정보화사업	4,432	4,253	△179	△4.0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로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부담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2025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합 계	67	67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	28	-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8	28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2) 세출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감면, 친환경차량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5.7% 감소한 92억 8,800만원임.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9,854	9,288	△566	△5.7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2025년 대비 34.4% 감소한 1억 1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기타경상이전수입	154	101	△53	△34.4
- 기타경상이전수입	154	101	△53	△34.4

2) 세출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9% 증가한 24억 5,300만원임.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제주보훈업무지원	2,384	2,453	69	2.9

III. 기금운용계획안

1. 보훈기금

1) 수입 운용계획안

- 2026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20.7% 감소한 5,521억 7,5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은 대부원리금, 예탁이자수입, 골프장 운영수입 등으로 2025년 대비 7.1% 감소한 1,830억 1,5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 등으로 2025년 대비 20.4% 감소한 1,154억 5,2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회수금으로 2025년 대비 28.4% 감소한 2,537억 8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96,168	552,175	△143,993	△20.7
○ 자체수입	196,930	183,015	△13,915	△7.1
- 재산수입	136,119	122,456	△13,663	△10.0
(골프장 매각대금)	132,000	118,000	(△14,000)	(△10.6)
- 경상이전수입	1,016	578	△438	△43.1
- 골프장운영수입	35,080	35,080	-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 용자원금회수	24,715	24,901	△186	△0.8
○ 정부내부수입	145,127	115,452	△29,675	△20.4
- 복권기금전입금	21,553	23,202	1,649	△7.7
- 기금예탁이자수입	120,000	90,000	△30,000	△25.0
- 기금예탁원금회수	3,574	2,250	△1,324	△37.0
○ 여유자금회수	354,111	253,708	△100,403	△28.4

2) 지출 운용계획안

- 2026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20.7% 감소한 5,521억 7,5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보훈복지시설 건립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0% 증가한 1,206억 6,7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기금 사업을 위한 경비로 2025년 대비 0.9% 감소한 8억 3,600만원임.
- 정부내부지출은 타 기금 전출금으로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축소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2.9% 감소한 607억 5,1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집행 후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쪽에 예탁하는 것으로 2025년 대비 24.3% 감소한 3,699억 2,1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합 계	696,168	552,175	△143,993	△20.7
○ 사 업 비	116,020	120,667	4,647	4.0
-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1,320	1,462	142	10.8
- 중상이자보조기기지급	2,228	2,472	244	11.0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39,771	40,245	474	1.2
-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875	1,015	140	16.0
- 보훈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	1,451	1,351	△100	△6.9
- 고령독거국가유공자 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	552	552	순증
- 보훈복지시설건립	3,783	6,031	2,248	59.4
- 보훈요양및양로지원	8,372	8,623	251	3.0
- 장학금	438	-	△438	순감
- 국가유공자등대부(용자)	22,679	22,679	-	-
- 국가유공자등대부관리	10,657	11,100	443	4.2
- 골프장위탁운영	17,643	18,358	715	4.1
- 골프장시설투자	4,077	4,027	△50	△1.2
- 참전기념사업지원	687	845	158	23.0
- 제대군인대부(용자)	1,751	1,619	△132	△7.5
- 제대군인대부관리	288	288	-	-
○ 기금운영비	844	836	△8	△0.9
- 인건비	228	237	9	3.9
- 기금운영비	616	599	△17	△2.8
○ 정부내부지출	90,546	60,751	△29,795	△32.9
- 공무원연금기금전출	74	15	△59	△79.7
- 복권기금전출	472	736	264	55.9
- 공자기금예탁금	90,000	60,000	△30,000	△33.3
○ 여유자금운용	488,758	369,921	△118,837	△24.3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수입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대비 1.5% 증가한 1,512억 6,900만원이 편성됨.
- 자체 수입은 예탁금 이자 수입, 친일 귀속재산 매각대금, 광복회관 임대료 등으로 친일 귀속재산 매각 추이, 광복회관 임대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7.5% 증가한 94억 7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5년 대비 1.3% 증가한 937억 5,4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연기금투자폴 사업비 회수금으로 2025년 대비 0.7% 증가한 481억 800만원임.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합 계	149,093	151,269	2,176	1.5
○ 자체수입	8,751	9,407	656	7.5
- 토지대여료	67	146	79	117.9
- 건물대여료	3,703	3,878	175	4.7
- 기타재산이자수입	1,737	1,813	76	4.4
- 변상금	39	58	19	48.7
- 기타경상이전수입	133	133	-	-
- 토지매각대	3,072	3,379	307	10.0
○ 정부내부수입	92,583	93,754	1,171	1.3
- 일반회계전입금	92,583	93,754	1,171	1.3
○ 여유자금회수	47,759	48,108	349	0.7

2) 지출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1.5% 증가한 1,512억 6,9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증액 및 광복회관 관리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 증가한 1,018억 8,8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2025년과 동일한 9,4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지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5% 증가한 492억 8,700만원임.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합 계	149,093	151,269	2,176	1.5
○ 사업비	100,891	101,888	997	1.0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96,997	98,097	1,100	1.1
-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469	281	△188	△40.1
- 독립유공자묘소관리	398	398	-	-
- 광복회관관리	3,027	3,112	85	2.8
○ 기금운영비	94	94	-	-
- 인건비	50	52	2	4.0
- 사업운영비	44	42	△2	△4.5
○ 여유자금운용	48,108	49,287	1,179	2.5

IV.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임무를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로 설정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로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가보훈부는 5가지 전략목표(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와 9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1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현황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9	11	1	-	1	9	5
		100%	9.1%	-	9.1%	81.8%	(45.5%)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세부 현황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한다

보훈심사및보상	①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1.0	일반 재정	99.96 (%)	정량	투입	
---------	------------------	-----	----------	--------------	----	----	--

프로그램목표Ⅰ-2. 보상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행정환경을 조성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0.5	정보화	88 (%)	정량	산출	
	②정보화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0.5	정보화	91.2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품질 향상으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혁신한다

보훈의료복지	①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1.0	일반 재정	90.03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	--------------------------------	-----	----------	--------------	----	----	----------------

프로그램목표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①골프장 1인 객단가	1.0	일반 재정	200.1 (천원)	정량	결과	
------	-------------	-----	----------	---------------	----	----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프로그램목표Ⅱ-3. 국가유공자의 취업·대부·교육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생활안정지원	①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0.4	일반 재정	91.0 (%)	정량	결과	
	②대부지원 만족도	0.6	일반 재정	82.9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활용한다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	1.0	일반 재정	81.5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률	1.0	일반 재정	67.9 (%)	정량	결과	

전략목표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보훈문화	①보훈문화의식 개선도	1.0	일반 재정	75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선양활동을 추진한다

보훈단체지원	①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	1.0	일반 재정	74.3 (점)	정성	결과	
--------	------------------	-----	----------	-------------	----	----	--

제2장 검토의견

I. 총괄

1.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1) 보훈체계 현황¹⁾

□ 우리나라 보훈 정책은 1950년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제정 이후, 1961년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 지원목적의 군사원호청이 발족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독립, 6·25전쟁, 베트남전쟁, 민주화 운동 등 근현대사에 굽적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보훈 영역에 포함되어온 특징을 가지고 있음.²⁾

□ 상이 및 전상 군경에 대한 생계지원에서 출발했던 보훈 정책은 유공자들에 대한 자활시책 등의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예우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1985년 시혜적 원호에서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 업무로 전환(원호처 - 국가보훈처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제대군인지원 업무는 군인보험 지급, 일선장병 위문에서 취업·생활지원, 국립묘지 안

1) 홍익표,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01 및 제4차 보훈발전기본계획에서 발췌·정리

2) - 60년대: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 80년대: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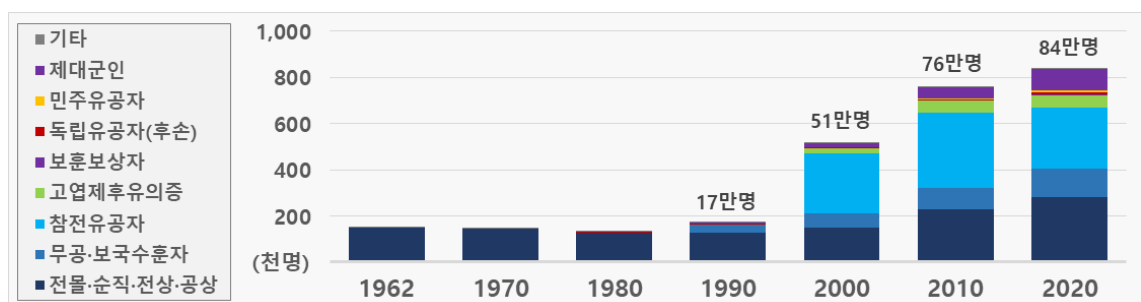
- 90년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제대군인

- 2000년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장, 전직지원금까지 확대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보훈대상자가 새로이 진입됨.

-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4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됨.

〈보훈대상자 구성 및 규모 추이〉



(자료: 국가보훈부)

- 2005년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제화했으며,³⁾ 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추진 방향, 추진과제 및 방법, 보훈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도록 함.⁴⁾

3)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재는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

○ 2012년에는 50여 년 간 이어져온 보훈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음.

-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을 시작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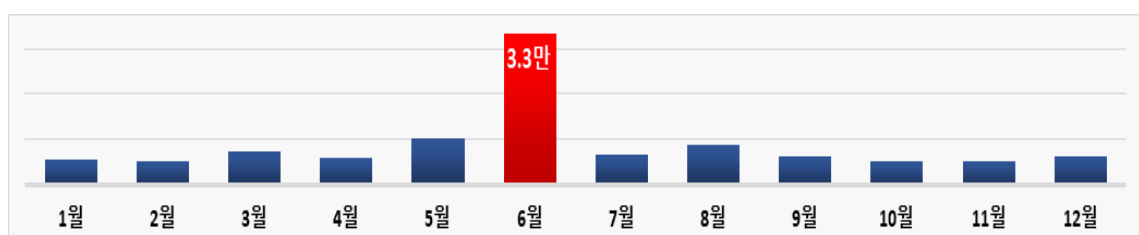
□ 그러나, 아직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아직 저조함.

○ 국민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함.

- 2022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는 응답은 31.9%로, ‘그렇지 않다’ 42.1%보다 낮게 나타남.

○ 보훈이 일상 속 문화보다는 특정 시기의 이벤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함.

〈SNS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월별 “보훈” 키워드 언급량(’17.~’21. 5년간)〉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정체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가 자신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이 저하된다고 답하고 있음.

5) 이는 보훈의 정체성 문제, 보훈과 복지의 경계 문제, 예우와 보상 분류 문제, 보훈 대상의 문제 등 (한국법제연구원, 2009)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음

- 보훈정책 만족도: ('18.) 18% → ('21.) 18.2% / 3년간 0.2%p 상승

-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18.) 63% → ('21.) 51.7% /

3년간 △11.3%p 하락

*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서” 1위(64.9%)

2) 보훈예산 현황

□ 보훈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보훈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보훈 대상과 보훈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보훈대상은 1962년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유공자 등 15만 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80만명, 2025년 83만명으로 3.75%가 증가했음.

□ 보훈예산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5조원, 2023년 6조원을 각각 돌파하였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6,582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3.3% 증가하였는 바, 정부 예산안 728조원 중 0.91%를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예 산	62,289	63,125	64,347	2,058	3.3
기 금	2,178	2,178	2,235	57	2.6
총지출	64,467	65,304	66,582	2,115	3.3

(자료: 국가보훈부)

□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율은 80년대 초 약 1.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 점유비율(미국 4.6%, 호주 1.2%, 캐나다 1.4%)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임.

〈우리나라 보훈예산과 정부예산에 대한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6년 예산안
정부예산(A)	58,040	226,894	864,740	2,012,835	3,014,172	7,280,059
보훈예산(B)	625	3,742	12,464	34,325	53,186	66,582
B/A	1.08	1.65	1.44	1.71	1.76	0.91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부문 예산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11.2% 증가하였으나 이는 같은 기간 보훈부문이 속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율(24.5%)이나 전체 총지출 증가율(20.7%)보다 현저히 낮으며, 2026년

예산안의 경우도 보훈부문 예산은 3.3% 증가함에 그쳐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율(8.2%)이나 전체 총지출 증가율(8.1%)보다 낮은 실정임.

〈보훈부문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지출	558.0 (8.9)	558.0 (8.9)	638.7 (5.1)	656.6 (2.8)	673.3 (2.5)	728.0 (8.1)
보건·복지· 고용분야	199.74 (10.6)	217.67 (9.0)	226.00 (3.8)	242.94 (7.5)	248.75 (4.7)	269.14 (8.2)
보훈부문	5.87 (2.7)	5.93 (0.8)	6.25 (5.3)	6.48 (3.7)	6.44 (0.6)	6.65 (3.3)

주: 본예산 기준, 각 연도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 증가분 괄호 안은 해당 기간 증가율임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보훈예산 중 보훈급여금 예산의 비율은 78.2%에 이르고 있음.

〈보훈급여금 예산규모〉

구분	보훈예산	보훈급여금	구성비율(%)
1990	3,742억원	3,195억원	85.4
2000	1조2,464억원	1조284억원	82.5
2010	3조4,325억원	2조6,449억원	77.1
2020	5조5,078억원	4조3,715억원	79.4
2026(안)	6조6,582억원	5조2,096억원	78.2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인원:명,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상금	192,964	3,197,518	190,606	3,325,248	191,448	3,468,124
간호수당	2,503	56,610	2,357	56,243	2,195	55,045
생활조정수당	16,473	42,027	21,365	55,899	31,505	89,526
6.25자녀수당	27,398	299,431	27,952	328,809	31,460	403,289
고엽제수당	35,115	298,384	34,614	310,694	32,883	309,760
무공영예수당	10,668	52,957	10,134	55,163	8,821	51,170
참전명예수당	144,756	608,794	138,010	646,292	124,123	625,993
4.19혁명공로수당	276	1,196	275	1,323	258	1,334
사망일시금	6,818	8,304	7,171	8,748	8,011	9,694
재해보상금	8	78	8	178	8	178

(자료: 국가보훈부)

3) 검토의견: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1) 2026년 예산안: 정부 예산안 증가율 대비 낮은 증가율

- 2026년 예산안을 프로그램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사업 기준으로 8개 중 ‘생활안정지원(△6.7%)’ 및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19.8%)’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보훈심사및보상’, ‘보훈문화’, ‘제대군인지원’ 및 ‘보훈행정’ 사업은 증가율이 0.1%~3.2%에 그침.

< 2026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 사업비	6,097,616	6,297,093	199,477	3.3
○ 보훈심사및보상	5,099,473	5,218,026	118,553	2.3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의료복지	668,765	769,324	100,559	15.0
○ 생활안정지원	28,952	27,007	△1,945	△6.7
○ 보훈문화	92,530	95,514	2,984	3.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17,699	94,361	△23,338	△19.8
○ 제대군인지원	34,860	35,331	471	1.4
○ 보훈행정	19,056	19,076	20	0.1

(자료: 국가보훈부)

〈2026년도 단위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 보훈보상금	3,562,819	3,717,505	154,686	4.3
○ 수당	1,518,748	1,482,250	△36,498	△2.4
○ 수시보상금	9,969	9,964	△5	△0.1
○ 보훈심사	1,631	1,598	△33	△2.0
○ 등록심사	6,306	6,709	403	6.4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21,776	11,047	103.0
○ 의료지원	649,800	728,296	78,496	12.1
○ 의료환경개선	8,236	19,252	11,016	133.8
○ 교육지원	26,134	23,933	△2,201	△8.4
○ 취업지원	2,818	3,074	256	9.1
○ 독립기념관	27,479	35,090	7,611	27.7
○ 보훈문화진흥	20,108	20,827	719	3.6
○ 현충시설	28,709	32,161	3,452	12.0
○ 기념사업	16,234	7,436	△8,798	△54.2
○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10,957	11,433	476	4.3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106,742	82,928	△23,814	△22.3
○ 제대군인생활안정	24,692	24,816	124	0.5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10,168	10,515	347	3.4
○ 청관사업차 및 시설개선	5,236	5,486	250	4.8
○ 일반행정	4,932	4,596	△336	△6.8
○ 보훈서비스지원	4,456	4,741	285	6.4
○ 정보화	4,432	4,253	△179	△4.0

(자료: 국가보훈부)

□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123개 과제와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전년과 동결되었고, 보상금은 2025년과 같이 5% 인상하였으나 2024년 인상률 5.5%보다는 낮음.

○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계속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오고 있음. 최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나,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고시에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⁶⁾ 2024년에는 10% 인상된 바 있으나,

6) 3인가구 이하 : 50%이하 242천원, 40%이하 277천원, 32%이하 311천원
4인가구 이상 : 50%이하 300천원, 40%이하 336천원, 32%이하 370천원

2025년과 2026년 예산안은 동결됨.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6년에는 중기복무자 78만원, 장기복무자 9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중기복무자 58만원, 장기복무자 81만원만 편성됨.⁷⁾

(2)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2026년도 예산안 중 신규 세부사업은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1개 사업만 편성됨에 그침.
- 정전 70주년 및 광복 80주년 등 주기적인 기념사업을 제외하고 2017년 예산부터 2026년 예산안까지 총 10년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단위사업 단위에서는 신규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2026년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1개 뿐임. 이를 내역사업 단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내역사업조차 신규사업은 총 4개에 불과함.

7) p. 201,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전직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필요 참조

〈최근 10년간 신규 내역사업 목록〉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 자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2018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 지원	국립묘지 외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독립 유공자 사후 예우 강화
202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기념사업 추진단 운영 및 기념사업 기획·대국민 홍보
2023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위로행사	호국보훈의 달 및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격려

(자료: 국가보훈부)

□ 앞서 살펴보았듯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2020년 1.7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놓여 있으며, 미국 4.6%, 캐나다 1.4% 등 주요 선진국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 또한,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후술한 개별 사업의 검토 내용과 같이, 의료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은 실제 소요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보상금 등에서 이·전용등을 통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충당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주요 프로그램별 이용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35,074	±26,318	±1,133	±52,915	±99,004
보훈심사 및 보상	△29,497	△26,318	△1,133	△52,915	△96,505
보훈단체지원	△2,404	-	-	-	-
보훈의료복지	34,270 △400	26,318	-	49,815	92,131
생활안정지원	29 △160	-	-	-	-
보훈문화	△1,662	-	-	-	△611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227	-	218	-	△514
제대군인지원	△724	-	915	3,000	2,909
보훈행정	775	-	-	100	2,590
회계기금간 거래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보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월평균 189,065명으로 편성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 사업 예산에서는 71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국가보훈부는 이 중 711억 8,300만원을 ‘보훈병원 진료’(469억원), ‘위탁병원 진료’(200억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42억 8,300만원) 사업에 각 이용하였음.

〈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A)	2,743,789	2,813,124	2,944,364	3,059,336	3,197,518	3,325,248	3,468,124
집행액(B)	2,695,588	2,794,347	2,941,338	3,034,761	3,127,504	3,258,090	3,396,849
집행잔액 (A-B)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이·전용	8,150	1,202	3,020	24,565	35,153	64,247	71,183
불용	40,051	17,575	6	10	35,311	2,911	62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보훈의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업의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오고 있음.
- ‘교통시설이용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지원금이 과소 추계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보전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음연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⁸⁾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급이 미루어진 미지급 이월액 99억 2,600만원은 전년도의 이월금액 40억 1,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제대군인 의료지원 세부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⁹⁾¹⁰⁾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2,365	2,365	910	3,275	3,275	138.5	100.0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8) P.117 참고

9) 2024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이는 진료비 등 지원금액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금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10) P.142 참고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계획’과 ‘2025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 승격에 맞추어 각종 보훈급여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성과보고서

1)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2)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

- 국가보훈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한 ‘2024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 목표(9개)-성과지표(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I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II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전략목표 III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IV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전략목표 V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자료: 국가보훈부)

3) 검토의견

(1) 성과달성률 저조

□ 국가보훈부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7개(70.0%)임.

○ 60개 중앙관서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총 507개 중 415개(81.9%)가 달성되고 92개(18.1%)가 미달성되었는데, 국가보훈부는 전체 평균인 81.9%보다 낮은 70%를 기록함.

- 국가보훈부는 2023년 75점, 2024년 75점에 이어 2025년에도 70점

으로 전체부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달성률도 2022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 전략목표Ⅱ(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의 경우 성과지표 4개 중 1개(25.0%)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점)’, 국가유공자 등 대상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88골프장의 ‘자기자본 이익률(%)’과 ‘내장객 수(명)’의 성과지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전략목표 달성 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지표 수	달성률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49,266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9,296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1/3
		달성률	25.0%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110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85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4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총 계	62,698	지표 수	10
		달성/미달성	7/3
		달성률	70.0%

(자료: 국가보훈부)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달성률 또한 75.35%로, 같은 기간 전체 부처평균인 76.35%보다 낮은 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프로그램 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전체부처 평균
2024	5	8	10	7	3	75	81.9
2023	5	9	20	15	5	75	76.9
2022	5	9	20	18	2	90	77.4
2021	5	9	12	10	2	83.3	76.6
2020	5	9	12	9	3	75	68.9
2019	5	9	13	7	6	53.8	76.4
평균	5	9	14.50	11.00	3.50	75.35	76.35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실국별로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보상정책국(90.43%), 제대군인국(99.90%)은 100%에 미달함.

〈성과지표별 · 실국별 목표 달성 현황〉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보상정책국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100.0	90.43

해당 실국	성 과 지 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 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요기간 단축(일)	106.7	102.0				
	신체검사 만족도(점)			100.1	100.2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			100.0	84.3		
보훈단체 협력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호응도(점)	100.5	102.1				117.95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			152.8	117.4	100.4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점)			100.1	100.2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명)			100.2	170.8		
복지 증진국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점)					98.4	101.84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점)	101.9	101.2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98.4	100.8	100.0	101.5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100.2	99.9		
	교육지원 만족도(점)						
	대부지원 만족도(점)	105.6	106.3	103.1	101.6		
	취업지원 만족도(점)	103.4	101.1				
	국가유공자 취업목표 달성율(%)			90.0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113.0		
	88CC고객만족도(점)	97.5	98.3				
	88골프장 내장객수(명)			104.9	98.9	91.3	
	자기자본 이익률(%)			110.6	85.1	84.4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건)			102.5	141.5		
보훈문화 정책관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점)					100.3	101.7
	보훈선양 정책 공감도(점)	100.0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천명)			100.6	180.7		
	보훈정신계승			101.0	100.0		

해당 실국	성 과 지 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 균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점)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점)			107.4	100.0		
보훈예우 정책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117.0	109.3	99.7			104.63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102.5	101.2		
	학술회의· 문헌발간 신진연구인력 참여 노력도(점)(25년 신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103.5		
제대 군민국	행사 참여자 한국인식개선도(점)						99.90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고용 만족도(점)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100.0	101.8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만족도(점)	96.5	100.0				
	제대군인 취·창업률 (%)			100.3	100.0	100.6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점)			100.1	99.8		
정책 기획관	정보화사용자 만족도(점)	101.3	107.4				101.95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			103.0	100.8		
	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					103.8	

(자료: 국가보훈부)

(2) 성과계획서와 다른 성과지표 실적 측정 및 측정기간 개선 필요

- ☐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목표 VI-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제대군인지원)’의 성과지표로 ‘제대군인 취·창업률(%)’을 설정함.

〈제대군인지원 성과지표〉

(전략목표) VI.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목표) VI-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제대군인지원)
(성과지표) 제대군인 취·창업률(%)
(측정산식) (제군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은 취·창업 지원제대군인 수 / 제대군인 센터 회원 수)*100
- 측정대상기간 : 2022. 12. 1. ~ 2023. 11. 30.

- ☐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를 제시할 경우, 표본추출 방법, 규모, 조사방법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측정대상 기간을 2022. 12. 1.부터 2023. 11. 30.까지로 설정하였는데도 2022.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제군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은 취·창업 지원제대군인 수’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였음.
- ☐ 그 결과 국가보훈부의 성과보고서에 프로그램 목표VI-1(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에 해당하는 예산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과 관련한 재정활동 성과가 왜곡되었음.
- ☐ 2025년 성과 측정의 경우에도 ‘2025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측정대상기간을 2023. 12. 1.부터 2024. 11. 30.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2025년의 실적이 아니라 2024년의 실적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측정대상기간을 설정할 때 회계연도 성과를 반영하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측정대상기간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프로그램 성과와 인과관계가 낮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 「202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 단위산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목표 Ⅲ-1을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로 설정하고 단위사업으로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세부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 성과지표〉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 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측정산식) 전체 국립묘지 방문인원 합산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만을 설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음.

○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세부사업은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단위 : %)’을 성과지표로 설정·운용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 삭제하였고,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세부사업 등은 성과지표를 설정·운용하지 않고 있음.

□ 향후 국가보훈부는 위와 같이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를 종합적·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세부사업별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¹¹⁾’ 및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¹²⁾’ 등 세부사업 구조변경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사업은 보훈단체에 인건비 및 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보훈단체의 각종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보훈단체협력관 소관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7,300만원(10.7%) 증액된 379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35,071	34,281	37,954	3,673	10.7

(자료: 국가보훈부)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200만원(3.3%) 증액된 82억 5,300만원이 편성됨.

11) 세부사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12)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 동 사업은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4100) 내의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단위사업(4161)에 속한 세부사업이나, 8개의 내역사업 중 제대군인국 소관 사업은 1개에 불과함. 나머지 7개의 내역사업 중 6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복지증진국 소관임.

〈2026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소관부서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기획조정실	9,342	7,991	8,253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2,285	2,303	2,303
현지참전 기념사업	기획조정실	1,222	1,121	1,121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기획조정실	2,641	2,387	2,387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기획조정실	700	714	569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기획조정실	1,268	963	803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200	187	187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348	250	809
공무직등 인건비	기획조정실	63	66	74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 ☐ 위의 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320-01)¹³⁾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6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규모는 ‘보훈단체 운영 및

13)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

선양활동등’ 사업에 378억 3,100만원,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에 2억 4,400만원임.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은 2025년 예산에 비해 36억 499만원 증가하였고,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2025년보다 2억 400만원이 감소함.

〈각 세부사업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협력관	29,196	29,647	451
	보훈단체선양 활동등	보훈단체협력관	5,031	6,395	1,384
	보훈단체 복지지원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	-	1,789	1,789
	소 계		34,227	37,831	3,604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	-	-
	현지참전 기념사업		-	-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81	81	-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290	145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60	-	-
	공무직등 인건비		-	-	-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체대군인국	18	18	-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	-	-
	소 계		449	244	△205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2023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함.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비목전환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일부 내역사업은 정부가 시행주체로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¹⁴⁾¹⁵⁾

□ 그런데, 동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각각의 내역사업¹⁶⁾에 대해,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였음.¹⁷⁾

14) 동 평가에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386p)

15) 같은 평가에서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도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음.(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375)

16)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

17)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p.376, p.377, p.381, p.386)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 사업 통폐합 필요성 지적 〉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376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함
- 개선사항(377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 중 발체)

〈통폐합 필요 지적 사업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수행주체	사업수혜자	비고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국제보훈 교류사업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수단의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위리어 게임) 출전 경비 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자료: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각 사업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사업수행주체와 내용, 수혜자 등이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세부사업에서 진행함에 따른 중복 소지를 해소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특히,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입찰 발주

및 위탁계약, 수탁사업 구분계리,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 등 민간 위탁사업비 집행·관리 절차¹⁸⁾를 이행해야 함을 고려할 때, 별개 사업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음.

○ 국회 정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2026년 예산안은 2024년 및 2025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개편 없이 종전과 같이 각각의 세부사업에 해당 내역사업들을 별도로 편성되었는바, 국가보훈부는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통합방안 및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 「국가재정법」 제21조¹⁹⁾는 세출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18)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98~p.200, 민간위탁사업비 비목별 지침

19)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세출예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1개의 프로그램에 1개의 ‘실’ 또는 ‘국’이 포함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그러나 국가보훈부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위의 국제보훈교류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램²⁰⁾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은 보훈단체협력관 및 복지증진국 소관이고,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세부사업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 소관이며,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은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 소관임.

- 국가보훈부의 2015년 예산의 경우 38개의 단위사업, 10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의 경우 32개의 단위사업, 8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동안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많이 통폐합하였음. 그러나 통폐합된 단위/세부사업의 예산안은 다른 세부/내역사업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규모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문제가 있음.

20)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국가재정법에 따라 도입)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²¹⁾ 이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을 알기 어렵게 됨.

□ 또한,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각 사업들의 과거 예산투입규모, 결산내역, 사업추진 성과 등 사업이력의 추적이 어렵게 되고, 각 사업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므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설정도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21) 2025년도 예산안에도 ‘현충시설건립세부사업’내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건립 등 3개 내역사업,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세부사업’내에 여가활동지원,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 등 2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4. 부대의견 조치결과

1) 개요

□ 정부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은 총 34건으로, 국가보훈부는 29건을 조치 완료하고, 5건은 조치 중이라고 밝힘.

□ 부대의견 중 조치 중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5번]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2026년 성과지표(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 [27번]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전직지원금은 계획과 달리 2026년 지급액은 동결되었으며,²²⁾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단 1건만 편성됨.²³⁾
- [29번]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

22) p. 20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참조

23) p.33,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참조

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함.²⁴⁾

- [31번]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함.

24) p.58,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및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세부사업 구조변경 필요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정무위 예비심사 부대의견 조치 결과〉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1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보상금 인원 추계항목 세분화(보훈대상별, 지급대상별, 상이등급별) 및 증감률 선별적용 '26년 예산 인원추계 * '25년도 10월 현재 보상금 집행률 83.3% 정상집행 중(12월 해외 보상금 지급예정) ** '25년 189,728→ '26년 188,188명 (△1,540명)	조치완료
2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추이 등 반영 생계지원금 예산 인원 추계 * '25년 3,535→ '26년 8,095명(본인) '26년15,883명(배우자) ** 배우자 생계지원금 예산은 법률 시행을 1월 계산하여 12월분이 편성한것임 (보상금) 보상금 인원 추계항목 세분화(보훈대상별, 지급대상별, 상이등급별) 및 증감률 선별적용 '26년 예산 인원 추계 * '25년도 10월 현재 보상금 집행률 83.3% 정상집행 중(12월 해외 보상금 지급예정) ** '25년 189,728→ '26년 188,188명 (△1,540명)	조치완료
3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참전명예수당 사업의 이·전용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참전유공자 지급인원 평균 감소인원 적용 '26년 예산인원 추계 * '25년도 10월 현재 보상금 집행률 82.0% 정상집행 중(12월 해외보상금 지급 예정) ** '25년 108,621→ '26년 93,420명 (△15,201명)	조치완료
4	○국가보훈부는 내역사업인 '검진비'의 집행 저조로 인하여 고엽제환자 등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음 - 외부병원 정밀검사 인정 확대, 전담 의사 추가 채용, 서면 검진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겠음	조치 중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5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운영및 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과거 실적보다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 현재 보훈단체 ①선양활동 언론 보도실적, ②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로 성과를 평가 중임 -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마련하겠음 - '26년도 목표치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 실적의 경우 '26년도 목표치 상승률이 9.6%로 '25년 상승률 5.3%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 호감도의 경우 '26년도 목표치 상승률은 2.0%로 '25년도 1.3% 수준을 상회하도록 목표 설정하였음	조치 중
6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이견 조율 여부, 건립부지 타당성, 지방비 확보가능성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보조금을 편성·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이 교부된 지자체의 보훈회관의 공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훈회관 적기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집행 부진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관계자회의를 통해 실행행률 제고 독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지(방)청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자체 지방보훈회관 건립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확보 노력	조치완료
7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누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26년 예산 정부안에 '23, '24년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99억 2,600만원 반영	조치완료
8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고, 향후 사업 규모 확대 시 간호간병 인력 충원 등 병상 운영 한도 증설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24년 대비 105병상 확대하여, 운영 가능 병상의 41.6% 운영중이며, 인력은 '24년 대비 59명 증원하였음 ○'25년 내 대구보훈병원 45병상 추가 확대를 위한 필요 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27년까지 운영가능병상의 51%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결과
9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5년 2차 추경으로 보훈병원 진료비 49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6년 예산안에는 '25년 본예산 대비 563억원, 추경 대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함	조치완료
10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훈대상자가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26년도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이 8.2%('25년 2,491억 → '26년 2,694억) 증가하며,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조치완료
11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적극 시행 - 보훈제도 안내 책자 수록('25.1월) - 보훈단체(상이군경회, 5.18 등) 대상 지원사업 안내 공문 발송('25.8월) - 국가보훈부 블로그 게시('25.9월) -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게시('25.9월) - 나라사랑 신문 안내('25.10월)	조치완료
12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학교 248,000원, 고등학교 372,000원, 대학교 472,000원, 특수교육 718,000원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추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 학습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25~'29년 중기사업계획 제출하였음 - 단가 100% 인상 요구 * 중 248천원, 고 372천원, 대 472천원, 특수 718천원 ○ 단가 인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조치완료
13	○국가보훈부는 '2025 전국 청소년 국외역사 문화교류탐방' 사업이 광복 80주년과 연관된 주제로 집행하고, 사업 집행 전 국무조정실에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확인한다.	○2025년도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사업은 광복 80주년 계기로 카자흐스탄 및 유럽 3개국(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사중복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음	조치완료
14	○국가보훈부는 2026회계연도'보보의 집 유지관리'예산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국방부는 부지 무상 사용 승인, 행안부(경찰청, 소방청)는 계기별 체험 행사(5월(어린이날), 6월(호국보훈의달) 등)에 인력·장비(경찰차, 소방차 등) 지원하여 예산 분담 대안으로 협업 추진, 2026년도에도 협업 적극 추진하겠음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15	○국가보훈부는 ‘광복80주년기념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 ‘25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광복 80주년 행사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를 설정	조치완료
16	○국가보훈부는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인력증원 예산 증액 요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 체계 구축 노력 ○ 재외공관, 지자체, 지역박물관 등에 후손찾기 홍보 협조 등 지속	조치완료
17	○국가보훈부는 국립5·18묘지 내 쉼터 공간 확장, 묘역 둘레길 휴게시설 조성,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및 묘역 배수 등 시설관리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립5·18민주묘지 시설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제출 완료 - 묘역 배수 개선 공사 ‘25년 2차 추경예산 반영(163백만원)하여 공사 진행 중 (‘25년 12월 완료 예정) - 쉼터 공간 확장, 묘역 둘레길 휴게시설 조성,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반영 지속	조치완료
18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조성사업의 2년간 4:6 비율로 편성한 공사비를 3년간 3:4:3 비율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공사비 예산을 ‘25년-’27년(3개년) 3:4:3 반영하였으며 공사 착공(‘24.12.) 후 정상 추진 중	조치완료
19	○국가보훈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 및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인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독립유공자 묘소 조사 관련 인력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25년 청년인턴 채용시 독립유공자 묘소실태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부서 및 본부 사업부서에 청년인턴 채용 및 배치 완료 * 상·하반기 및 단기형 청년인턴 44명 채용	조치완료
20	○국가보훈부는 2030 자문단의 투명한 활동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한다.	○ 자문단 활동사항은 분과별, 개인별 정책 자문을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자문단의 활동사항에 대한 예산 집행 시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음	조치완료
21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000만원)은 국가보훈부장관, 차관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감액 내역 반영하여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완료○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22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결정 취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88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 분석 연구용역 추진 중('25.7월~11월) ○ 최근 언론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제기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전면 재검토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음	조치 중
23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고 채권 양수의 수행 방식과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고, 구분 편성 내역을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25년부터 국가유공자대부(용자) 등 세부사업을 '직접대부 용자금'과 '위탁대부 채권양수'로 분리하였으며, '26년 예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회 심의 예정임 * '25년 확정예산 II-1 사업설명자료, '25년 보훈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각목명세서, '25~'29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조치완료
24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한다.	○ '25년 친일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송출 실시 및 캠페인 진행, 친일귀속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반영한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친일귀속재산 매입을 위한 협조 공문(시행: 10.28) 등 기금 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 추진 중 ('25기준 입찰 31개 필지 매각)	조치완료
25	○국가보훈부는 순국지를 QR코드,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QR코드 연동시행 및 SNS 홍보 강화 실시('25.1월)	조치완료
26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및 보훈급여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포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기존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보완, 새로운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예정 - 지자체 보훈수당 정책포럼 실시('25.9.26., 국회도서관) ○ 상이 보상금 중 일부에 대해 소득평가액에 미포함('26년 시행 예정) -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 통과('25.7.31.)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결과
27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25년 2차 추경으로 보훈병원 진료비 49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6년 예산안에는 '25년 본예산 대비 563억원, 추경 대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을 위해 노력	조치완료
28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계 등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노력, 각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담당 부서 등의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달성을 제고 노력	조치완료
29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한다.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고려하여 '27년도 예산 편성 시 개선 노력	조치중
30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을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납률 추이 및 최근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25.3월 상임위 보고) * 과태료: ('25) 88백만원 → ('26) 11백만원 기타고정자산매각: ('25) 35백만원 → ('26) 13백만원	조치완료
31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과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의 사업내용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27년도 편성 시 개선 노력	조치중
32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은 독립기념관 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한다.	○독립기념관 내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33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설립되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의 전시 구성내용의 경우 독립기념관의 운영 및 전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독립기념관 내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	조치완료
34	○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 명칭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광복80주년 특별관 개관 전 국민 의견 수렴 계획 예정	조치완료

II. 일반회계

[세입]

1. 건물대여료²⁵⁾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물대여료’는 국가보훈부 소유 구내식당과 매점 등 국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건물 대여료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만원(4.3%) 증가한 9,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	(B-A)/A
건물대여료	98	94	-	98	4	4.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수납액 증가를 반영한 세입 증액 필요

- 동 사업의 연도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3,700만원, 2024년 4,1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1억 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또한 2023년 4,900만원, 2024년 9,800만원,

25)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025년 10월 기준 1억 8,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3	94	49	37	39.5	76.2	12	-
2024	94	78	41	43.6	52.6	37	-
2025.10	94	183	156	151.1	78.5	27	-

(자료: 국가보훈부)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보다 건물 내에 임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료 또한 현실화하여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예를 들면, 서울현충원의 경우 꽃집 임대를 2024년부터 시작하였고, 임대료는 2024년 1,100만원에서 2025년 6,3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5년 기준으로 서울·대전현충원, 영천·임실·괴산호국원, 임시정부 기념관 등에서 건물대여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건물대여료 상세 수납 내역〉

(단위: 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대전현충원	1,760	1,760	-
영천호국원	1,188	1,188	-
임실호국원	1,155	1,155	-
괴산호국원	748	748	-
임시정부기념관	3,807	1,027	2,779
서울현충원	9,686	9,686	-
합계	18,344	15,564	2,779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최근 건물대여료 상승 추세 및 수납액 증가 규모를 감안하여 건물대여료 수입계상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원 교육 강화 필요

- ☐ 건물대여료 상세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의 경우 2024년도에 2024년 대여료 뿐만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25년도 대여료를 징수결의하여 징수함.

2025년도에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입이 2024년도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다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재산이전수입 상세 수납 내역〉

(단위: 만원, %)

시설명	수납상세내역	최초납기일	수납액	미수납액
국립5.18민주 묘지관리소	2024년도 국유재산 (매점, 자동판매기)	2024-02-16	100	-
	2025년도 국유재산 (매점, 자동판매기)	2024-12-27	100	-
산청호국원	2024년도 국유재산 (매점, 식당)	2024-07-21	100	-
	2025년도 국유재산 (매점, 식당)	2024-07-21	359	
괴산호국원	2024년도 국유재산 (매점, 식당)	2024-08-31	728	
	2025년도 국유재산 (매점, 식당)	2024-12-31	780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국가보훈부는 2022~2023년도에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반영하지 못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에 산청호국원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여료를 각각 435만원과 1,374만원을 반환함.²⁶⁾

○ 괴산호국원의 경우, 2024년에 2024년 및 2025년도 대여료를 징수결의하여 수납처리한 후, 2025년에 4차례에 걸쳐 2024년과 2025년 부과분 사용허가 변경 처리를 통해 대여료를 수정하여 징수함.

26) 0월 징수결의 후 과오납 반환으로 처리함.

〈환급 또는 대여료 수정 내역〉

(단위: 만원, %)

시설명	사유	최초납기일	수납액
산청호국원	2022년도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경감에 따른 국유재산(식당 및 매점) 건물 사용료 환급	2022-11-30	△435
임시정부 기념관	2023년도 카페 및 기념품샵 사용료 환급	2023-12-31	△1,375
괴산호국원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3차	2025-02-28	182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4차	2025-04-30	182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5차	2025-06-30	182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6차	2025-08-29	200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대여료 산정 및 연도별 수납 고지를 함에 있어
위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타재산이자수입²⁷⁾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금 및 국고보조금 예탁 시 발생한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정산 반환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00만원 증가(17.6%)한 6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기타재산이자수입	1,052	511	-	601	90	17.6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독립기념관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 반납 지연 문제

-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전년도 금액을 정산하여 당해 납부하는게 원칙이나,²⁸⁾

27)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기념관의 경우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 달리 연례적으로 전년도 정산액을 당해에 납부하고 있지 않음.

- 2020년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 반납은 2022년에, 2021년 및 2022년 이자 및 환급금 반납은 2024년에 각각 이루어졌으며, 2025년 10월 기준 2023년 및 2024년 이자 및 환급금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최근연도 독립기념관 이자·수익금·환급금 반납일〉

(단위: 만원, %)

연도별	징수 결의일	수납일	수납액
2020년 독립기념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2022-04-11	2022-04-20	2,280
2020년 독립기념관 운영지원 수익금 반납	2022-04-11	2022-04-20	492
2021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 반납	2024-01-22	2024-01-27	1,764
2022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 반납	2024-01-22	2024-01-27	6,530
2022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2024-01-22	2024-01-27	4,884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결산잉여금 결산 등에 기간이 오래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산잉여금 확정은 모두 차년도 2월에 확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 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결산잉여금 발생액	처리내역		확정시기 (이사회 의결일)
		차기 이월 (이월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2020년	819	819	-	'21.2.23
2021년	559	559	-	'22.2.23
2022년	662	662	-	'23.2.27
2023년	383	383	-	'24.2.28
2024년	855	680	175	'25.2.26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과 달리, 백범김구선생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광복회 등 다른 기념관 또는 단체의 경우 2023년 국고보조금 정산금은 2024년에, 2024년 정산금은 2025년에 각각 납부를 완료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기념관의 결산잉여금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의 수납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3. 징계부과금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 등에 의해 국가가 수납할 징계 관련 부가금 수입으로,²⁹⁾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되었음.

〈2026년도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본 예산	추경(A)			
징계부과금	6	-	-	-	-	-

(자료: 국가보훈부)

29)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검토의견: 과거 징수실적을 고려한 수입계획안 계상 필요

- 국가보훈부 세입예산안에는 징계부과금 수입이 장기간 계상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이 2021년부터 매년 부과(징수결정)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매년 수납되고 있는 실정임.
- 2021년, 2023년 및 2024년에는 징수결정을 12월 31일에 각각 고지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수입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4년에는 ‘의료지원비 과오급금’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건을 담당자의 착오로 징계부과금으로 징수결정(6,874,100원)함.

〈최근 4년간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21	-	-	-	9	-	-	0.0	9	-
'22	-	-	-	9	9	-	100.0	-	-
'23	-	-	-	10	5	-	49.8	5	-
'24	-	-	-	13	6	-	47.5	7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과거 징계부과금 징수 실적 및 지속 여부에 대한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징계부과금 수입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연말 징수결정
고지를 지양하는 등 수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교육부는 최근 5년간 결산액 평균으로 매년 징계부과금을
수입 계상하고 있으며, 2026년도 편성액은 4,200만원임.

4. 기타경상이전수입³⁰⁾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 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86억 5,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기타경상이전수입	4,537	8,652	8,652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보훈급여금 과오급 수납률 제고 및 발생 축소 노력 필요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항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³¹⁾ 환수사유는 ① 범죄,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30)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신상변동신고를 지연·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³²⁾ ② 지급제도 변경, 담당자 변경 및 실수로
인하여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③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정정, 범죄
경력 통보 등을 누락하여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분류됨.³³⁾

□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
수 및 수납률은 2020년 142건/20.5% → 2021년 254건/20.2% →
2022년 164건/23.6% → 2023년 312건/24.8% → 2024년 218건
/23.1% → 2025년 9월 기준 181건/16.1%임.

〈2020~2025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유형별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급		행정 착오		군기록 정정·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42	632	55	364	27	164	60	104
2021	254	3,514	87	1,664	41	411	126	1,439
2022	164	2,423	53	688	22	337	89	1,398
2023	312	1,520	225	1,010	36	322	51	188
2024	218	1,021	96	670	29	101	93	250
2025.9	181	1,259	58	818	37	208	86	233

(자료: 국가보훈부)

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32) 신상변동 사항 신고 지연 및 누락의 경우 4개월 이상에 한함

33)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범죄경력 통보 누락 등, 상이등급 (직권)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동, 3개월 이내 신상변동 사항 등 신고 지연 · 누락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20년	3,048	632	625	2,393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2025.9월	4,297	1,259	691	3,389	217	16.1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3년간 국회(정무위, 예결위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포함)에서 수 차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실적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국가보훈부는 여러 과오급금 수납 실적 제고 방안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개선은 없는 상황임.

○ 국가보훈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과오급금 분할납부제, 납부기 피자 연체금 징수,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연계,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납률은 여전히 20%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건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① ‘부정 수급’은 납부의무자가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분 고액³⁴⁾인 과오납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며, 수급권자

가 사망한 이후 확인되어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② ‘행정착오’의 경우 제도가 수시로 바뀔에 따라 담당자의 착오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③ ‘군기록 정정·기타 소관기관이 통보를 누락한 경우’는 범죄 등과 같은 신상변동사유 발생의 확인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오급금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행정착오’의 경우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체계의 철저한 확립 및 지휘·감독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3년 7월부터 자체교육을 강화한 이후인 2024년에도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은 29건, 1억 100만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국가보훈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보훈급여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사기와 명예를 저하시키고 보훈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³⁵⁾에 따라 엄격하

34) 2024년 기준 징수결정 건수(429건) 대비 평균 발생액 약 955만원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³⁶⁾

-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건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6)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연번	부정수급액	발생경위
1	5,800만원	·유공자의 조카이나, 허위부정 등록 ·2018.11. 경찰서 고발 후 2018.12. 혐의없음 통보
2	7,900만원	·개가 및 이중호적 취득한 유공자의 배우자가 부정수급 ·2018.8. 경찰 수사 의뢰 후 검찰 송치, 2019.7. 징역 1년 6개월 선고
3	8,300만원	·유공자의 배우자 2005.1월 사망 후 자녀가 보상금 부정수급(사망 미신고) ·2018.11. 경찰서 고발 조치 후 2019.9. 징역 1년 선고

자료: 국가보훈부

5. 기타잡수입³⁷⁾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잡수입’은 불용물품 매각 대금 및 기념관 주차장 수입 등으로 구성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6,200만 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잡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잡수입	277	362	362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기념관 수입 세입 계상 필요

- 2024년 기타잡수익의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결산액 2억 7,700만원 중 대부분이 윤봉길의사기념관 주차장 수입(1억 9,700만원)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수입(5,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윤봉길의사기념관 주차장 수입은 2024년도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수입은 2023년도부터 각각 기타잡수익으로 계상되고 있음.

37) 세부사업: 기타잡수입(69-691)

□ 국가보훈부 산하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념관은 총 8개소가 있는데, 이 중 독립기념관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호남호국기념관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 대상에 편입이 불가능함. 나머지 6개 기념관 중 윤봉길의사기념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외에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4개 기념관은 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기념관별로 세입 대상에 편입 여부가 다른 것에 관해 국가보훈부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의 경우 서울시 시정요구에 따라 주차장 수입만 국고로 세입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기 어려움.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은 일부 금액을 수입 처리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수입처리하지 않는 등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각 기념관의 자체수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백범김구기념관	413 (-)	499 (-)	971 (-)	1,162 (-)	1,253 (-)
안중근의사기념관	7 (-)	10 (-)	17 (-)	18 (-)	27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233 (-)	234 (-)	289 (-)	318 (197)	322 (176)
유엔평화기념관	5 (-)	3 (-)	6 (-)	24 (-)	26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1 (-)	-	0.4 (0.4)	0.4 (0.4)	1 (-)
호남호국기념관	-	-	-	-	-

※ 징수액은 국고 수입처리된 금액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기념관별 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세입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17조38)의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므로, 국가보훈부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기념관의 경우 세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38)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세출]

1. 보상금³⁹⁾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상금’ 사업은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6억 8,600만원(4.3%) 증가한 3조 7,175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상금	3,396,879	3,562,819	3,717,505	154,686	4.3

(자료: 국가보훈부)

- 보상금 사업의 예산은 독립유공자 또는 상이군경 등, 본인 또는 유족, 상이등급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각 지급대상자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지급할 보상금 지급액에 해당연도에 예상되는 지급 인원을 추계하여 편성되는데,

39) 세부사업: 보상금(1132-300)

그 중 예상 지급 인원은, 예산 편성 당시의 결산 인원(최근 n개년 지급 인원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법·제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증감하게 되는 예상인원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보상금의 지급 예상인원(편성인원)을 24년 결산인원에 2개년('23~'24)~5개년('20~'24) 평균증감률 중 더 적은 인원이 산출되는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총 188,188명으로 추계하였고, 위 인원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보상금 지급액을 적용하여 총 3조 7,175억 5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함.

〈보상금 사업 예산 편성 기준〉

예산안 편성 기준	=	각 대상 유형별 보상금 지급액	×	각 대상 유형별 예상 지급 인원
2026년도 예산안 편성	=	2026년도 지급액 (25년대비 5% 인상)	×	[24년 결산 인원 × 2개년~ 5개년 평균증감률 ²]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보상금 지급 예상인원(편성인원) 추계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 편성 당시 가장 최근의 결산인원(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4년도 결산인원)을 기준값으로 하여, 이 값에 향후 예상되는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n개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편성인원을 추계하는 방식임.⁴⁰⁾

○ 보상금 지급 예상인원 추계에 n개년 평균증감률을 사용하는 것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보상금 지급 인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신규등록하는 인원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보상금 지급 인원 등 제도적 변화 없이 발생하게 되는 지급 인원 변화 추세를 편성인원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급 인원 변동 추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발생하는 일시적 인원 증가분은 추세를 반영하려는 평균증감률 측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2024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 개정으로 종전에는 고엽제수당을 지급받는

40) 보상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대규모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2~5개년 평균증감률 중 가장 적은 인원이 추계되는 n개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집행잔액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4개 질병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됨에 따라,⁴¹⁾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4개 질병 대상 누적 등록인원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전환되었고, 이는 2024년도에 상이군경 본인 등의 결산인원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2024년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 인원〉

(단위: 명)

구분	상이군경 본인								유족		합계
유형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6급3항	7급	1-5급	6급	
계	3	186	16	105	148	662	893	47	118	75	2,253

* 유족 중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한 결산인원 증가는 해당 연도에만 발생하는 일시적 증가요인으로, 향후 유사한 규모의 증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연적 인원 변동 추세를 반영하려고 하는 평균증감률 계산에는 되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런데, 2026년도 각 유형별 보상금 지급 인원 추계에는 고엽제법 개정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인원 증가분을 포함하여 각 유형별 평균증감률이 계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유형별 증감 추세를 반영하는 평균증감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41) 2024년 법률 개정(2024. 2. 13.)으로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수당을 받는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함.

- 예를 들어, 보상금 지급대상 중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이 포함된 상이군경 본인 6급 2항의 경우, 2023년까지의 결산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4년의 경우에도 제도 변화에 따른 전환 인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되는데도, 제도변화에 따른 전환 인원 증가분까지 추세에 반영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급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상이군경 6급 2항 결산인원 및 증감 추세〉

(단위: 명, %)

구분		결산인원				평균증감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5개년
						(전환인원 제외)	(전환인원 제외)	(전환인원 제외)
상이 군경 본인	6급2항	35,649	35,461	35,155	34,999	35,657	0.7	0.01
						34,995	△0.2	△0.5

* 소수점 2번째 자리에선 반올림하여 표시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향후 제도 변화로 인한 보상금 지급 인원의 일시적 증가 요인이 예상인원 증감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조정수당⁴²⁾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억 3,300만원(28.9%) 증가한 1,092억 8,7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생활조정수당’ 내역사업과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억 3,200만원이 증가(578.3%)한 287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생활조정수당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생활조정수당	82,171	84,754	109,287	24,533	28.9
- 생활조정수당	73,911	80,512	80,512	0	-
- 생계지원금	8,260	4,242	28,774	24,532	578.3

(자료: 국가보훈부)

42)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2) 검토의견: 법 시행일에 따른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은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지급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와 관련하여, 현재는 나이 기준(80세 이상)과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음(2025년 9월 16일 일부개정).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참전유공자법 개정 내용〉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7호, 2025. 1. 21, 일부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u>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u>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u>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u>
<신 설>	2. <u>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u>

□ 국가보훈부는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을 15,883명으로 추계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5년 6월 기준 생계지원금 지급 인원 8,095명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 15,883명을 더한 23,978명을 편성인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12개월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총 28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생계지원금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구분		편성인원 (A)	지급금액 (B)	지급월 (C)	편성금액 (A×B×C)
생계 지원금	기존 지급대상자	8,095명	월 10만원	12개월	97억 1,40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15,883명	월 10만원	12개월	190억 5,96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법률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상인원 추계를 살펴보면, 기사망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전체 인원⁴³⁾ 중 80세 이상 12만 6,657명에 2022년 기준 전국 80세 이상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13.2%를 적용한 16,719명을 지급 예상인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총 12개월 중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여 1분기(1월~3월)에는 지급

43) 부칙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예상인원의 80%만을 적용하여 월 평균 편성인원 15,883명을 산정하였음(2~4분기 100%).

〈법률 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 추계〉

구분	80세 이상 (A)	적용비율 (B)	지급 예상인원 (C=A×B)	월 평균 편성인원 [D=(C×0.8×3)/12+(C×9)/12]
참전유공자 배우자	121,083명	13.2%	15,983명	15,184명
고엽제 배우자 (월남참전)	5,407명	13.2%	714명	678명
고엽제 배우자 (국내고엽제후유증 환자)	167명	13.2%	22명	21명
합계	126,657명	13.2%	16,719명	15,883명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위 개정 참전유공자법은 2025년 9월 16일에 공포되어, 2026년 3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므로,⁴⁴⁾ 실제 개정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시기는 2026년 3월분부터가 될 것임.⁴⁵⁾⁴⁶⁾

□ 결국,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생계지원금 사업의 예산안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정하고

44) 부칙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부칙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6) 생계지원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므로, 동 개정 법률 시행 전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나, 참전유공자법은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 15일 이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3월분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됨.

* 참전유공자법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편성한 1월·2월 2개월분의 생계지원비 지급액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생계지원금 사업의 예산안 중 법 시행 시기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진 부분은 그 편성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당초 지급 예상인원 추계 시, 3월 편성인원을 예상인원의 80%만 적용하였으나, 10개월분으로 조정할 경우 3월 편성인원을 100%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반영하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없이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인원(22명)도 고엽제법 개정을 전제로 지급 예상인원에 포함하여 추계하였으므로,⁴⁷⁾ 이를 수정하여 금액을 재계산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편성금액은 약 23억 6,2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금액 조정 필요분〉

구분	편성인원 (A)	지급월 (B)	참전유공자 배우자 부분 예산안 (C=A×B×10만원)
예산안 편성	15,883명	12개월	190억 5,960만원
조정안	16,697명*	10개월 (3월~12월)	166억 9,700만원
차이			23억 6,260만원

* 편성인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15,983명)+고엽제 배우자(714명)

** 편성인원에서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 예상인원 22명을 감하였음.

47) 월남전쟁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도 해당하게 되므로, 참전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만을 받으므로, 참전유공자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음.

3. 등록관리⁴⁸⁾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록관리’ 사업은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 대통령 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생활수준조사 통지 및 국가보훈 기록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00만원 (24.3%) 증가한 41억 4,5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증서관리’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IC국가보훈등록증 등을 발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7,700만원(76.6%) 증가한 20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등록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록관리	6,309	3,336	4,145	809	24.3
- 증서관리	2,724	1,145	2,022	877	76.6

(자료: 국가보훈부)

48) 세부사업: 등록관리(1143-328)

2) 검토의견: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구매 수요 산정 필요

□ 내역사업인 ‘증서관리’의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등은 신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기존 보훈대상자의 국가유공자증 등을 교체 발급하는 사업임.

□ 국가보훈부는 2023년 기존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⁴⁹⁾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하였고, 같은 해 6월부터 2024년까지 2개년에 걸쳐 기존 발급자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등록증을 교체 발급하기로 계획하였음.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계획 〉

구분	발급 시기		대상	계 획
시범발급	2023년	6.~7.	신규등록자	2,000명
정식발급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명
		10.~12.	1936년~1945년 생	110,000명
	2024년	1.~3.	1946년~1949년 생	127,000명
		4.~6.	1950년~1955년 생	124,000명
		7.~9.	1956년~1965년 생	114,000명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000명	

(자료: 국가보훈부)

49)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엽제, 고엽제2세)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제대군인증(장기·중기)

□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는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을 위한 제작 매수 66만 매 구매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25년에는 신규 발급 분으로 6만 매 구매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교체 발급 사업의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5년 9월 기준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의 재고 보유량은 약 41만 매⁵⁰⁾에 이름.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 편성 현황 및 발급 건수〉

(단위: 매)

구분	합계	연도별 발급 건수		
		2023년	2024년	2025년(8월말)
편성 매수	720,000	300,000	360,000	60,000
발급 매수	290,050	66,655	151,747	71,648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위한 발급기를 2022년 31대 구매하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 구매하여, 현재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보유량은 50대임.⁵¹⁾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보유 현황〉

(단위: 대)

구입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매 예정)
구입 대수	31	7	6	6
총 보유 현황	31	38	44	50

(자료: 국가보훈부)

50) 2025년 편성 매수 중 현재 5만 매만 구매한 것을 반영한 결과임.

51)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에 6대 구매 비용을 편성하였고, 이를 10월에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힘. 보유량 50대에는 2025년 구매 예정분 6대가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한 국가보훈등록증 재고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5,800원×60,000매=348백만원	5,800원×60,000매=348백만원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추가 구매	7,300천 원×6대=43.8백만원	7,300천 원×6대=43.8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 구매는, 연간 발급실적 및 재고 보유량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보유량만으로 2026년도 발급 분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분량을 우선 소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는, 2022년부터 구입을 시작하여(내용연수8년) 교체분이 아직 발생하지 않으며,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방청, 지청의 수(지방청 6곳, 지청 21곳, 총 27곳)를 감안할 때, 현 보유량을 고려하여 추가 구매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²⁾

52) 고장 등에 따른 예비분을 감안하더라도, 총 54개 보유 시 각 지청 및 지방청당 2개의 발급기를 보유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음.

-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사업은 사업의 집행실적,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과 발급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관련 예산안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다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집행실적 및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구매 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4.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⁵³⁾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선양활동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7,300만원 (10.7%) 증가한 379억 5,4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은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6,400만원(27.1%) 증가한 6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사업인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억 8,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A)	추경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35,071	34,281	35,081	37,954	3,673	10.7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5,914	5,031	5,831	6,395	1,364	27.1
- 보훈단체복지지원	-	-	-	1,789	1,789	100

(자료: 국가보훈부)

53) 세부사업: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2) 검토의견

(1)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내실있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2026년도에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으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중식비(당사자 부담 1천원 제외)와 보훈회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부에 지원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약 110개(시·구 80개, 군 30개)로 예측하여 점심 지원 인원을 연간 총 72만 9,600명으로 추계하였고, 위 인원예 식대단가 5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점심 지원 인원 추계〉

구분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1회당 참여 인원*	연간 지원 횟수**	연간 참여 인원
시·구	80개	80명	96회	61만 4,400명
군	30개	40명	96회	11만 5,200명
계	110개	-	-	72만 9,600명

* 국가보훈부는 1회당 참여인원을 지자체별 1일 평균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함.

** (연간 지원 횟수) = 주 2회 × 4주 × 12개월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단체 복지지원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점심지원	$2\text{천원}^* \times 729,600\text{명} = 1,459\text{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300\text{만원} \times 110\text{개} = 330\text{백만원}$

* 식대단가 : 5천원(자부담 1천원, 국비 2천원, 지방비 2천원)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비용을 5:5로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약 1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였는 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수의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동 사업의 수요 파악을 위하여 2025년 7월 실시한 ‘보훈회관 내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사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보훈단체는 248개 중 107개 단체가 점심 지원 사업에 찬성한 반면, 정작 지방비를 부담하고,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업을 찬성하였고, 196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을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다면,⁵⁴⁾ 실제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률이 계획대비 저조할 수 있음.

54)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훈회관 내 식당 부존재로 인한 지원 공간 확보의 어려움,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함.

- 계획대비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다면, 이는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편성된 예산의 불용 발생 등 집행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보훈회관 내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사업 수요조사〉

(단위: 개)

구분		찬성	반대	미회신
보훈단체	지부(18)	9	9	0
	지회(230)	98	114	18
	계(248)	107	123	18
지방자치단체	광역시(17)	4	13	0
	기초(228)	24	183	21
	계(245)	28	196	21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현재 248개 보훈회관 중 식당을 보유한 곳은 10개소⁵⁵⁾에 불과하고, 그 중 1회당 지원 인원 80명(시·구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곳은 서울 강북구(83석)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식사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인근 식당을 활용하거나 도시락 제공 등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자체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는 국가보훈부가 책정한 식대 단가 5천원으로 외부 식당을 연계하거나 적정 수준 이상의 도시락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⁵⁶⁾ 이러한 방안을 활용

55) 서울 중구·강동구·노원구·동대문구·강북구·광진구·성동구(7개소), 인천 미추홀구, 광명시, 평택시

56) 식당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2곳(성동구, 광명시)을 제외하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식대 단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보훈회관 현황〉

구분	서울 중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북구
식당 규모	184.79㎡, 40석	122.4㎡, 48석	50㎡, 24석	110.5㎡, 44석	154.6㎡, 83석
식대 단가	5,000원	5,000원	7,480원	5,400원	5,000원
구분	서울 광진구	서울 성동구	광명시	인천 미추홀구	평택시
식당 규모	46.74㎡ 20석	25㎡ 32석	18㎡ 40석	36석	36석
식대 단가	4,000원	3,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서울 성동구와 광명시의 경우 식당 운영비 중 일부(성동구 식당 운영비에 대한 구 보조율 약 53%, 광명시 식당 인건비 시 지원)를 지원받고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률 제고, 식사 지원을 위한 식당 등 제반 여건 마련 등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되기 위하여 사업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면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보훈회관의 평균 식대단가도 5,000원을 넘는 현실에서, 외부 식당 등에서 단가 5,000원으로 식사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24 직장인 점심식사 및 구내식당 관련 인식 조사’(엠브레인), 모바일 식권 서비스 회사의 점심 식대 결제 데이터 기반 조사 등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점심 값은 약 9,000원~1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동아일보 2025. 1. 14. 기사, 연합뉴스TV 2025. 7. 1. 기사, 매일경제 2024. 4. 24. 기사 등 참조).

(2)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보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선정 기준 마련과 절차 준수 필요

□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 사업은 각 보훈단체의 선양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2026년도에 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보훈의 가치를 계승하는 보훈단체가 독립, 호국, 민주의 대표적인 단체 특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16개 보훈단체⁵⁷⁾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할 계획임.

□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보훈단체별 특화 선양사업을 발굴·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2025년에 신규 편성되었던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 3,600만원, 2026년도 폐지)과 그 목적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데, 2026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2025년에 집행된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동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57) (독립) 광복회, (호국) 상이군경회, 저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민주) 4·19관련 3개 단체, 5·18관련 3개 단체

- 첫째, 2025년도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5개의 보훈단체 지부의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일부 사업은 당초 보훈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선양활동을 발굴·지원한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임.58) 이로, 동 사업의 시행 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59)

〈2025년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선정 사업(일부)〉

지방청	보훈단체명	사업내용	교부액
서울	A	스마트폰&키오스크 교육	400만원
대구	B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운용 교육	5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각 지방청 별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59)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향후 동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60)

58)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추진계획의 충실성,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성, 행사추진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사업대상자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각 보훈단체별 특화된 선양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5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현황〉

사업명	일시	위원	내용
보훈회관 이음+	'25. 4. 13.	7명 (외부 4, 내부 3)	이음플러스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부 작성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 대상 보조사업, 사업 수행방식 등이 2025년에 추진한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⁶¹⁾

60) 국가보훈부 답변에 따르면, 2025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보훈회관 이음+”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개최(4.13.)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최된 바 없음.

61) 2025년 10월 말 현재,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년 11월에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

5. 교통시설 이용지원⁶²⁾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억 4,700만원(103.0%) 증가한 217억 7,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통시설 이용지원	10,730	10,729	21,776	11,047	103.0
- 민영버스	8,464	8,484	19,531	11,047	130.2
- 고속철도	2,163	2,163	2,163	-	-
- 내항여객선	102	82	82	-	-
- 무인발매기 개발 등	1	-	-	-	-

(자료: 국가보훈부)

62) 세부사업: 교통시설 이용지원(2139-318)

2) 검토의견: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민영버스’ 내역사업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와 시외·고속버스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예산은 110억 4,700만원 증액 편성⁶³⁾되었고, ‘시외·고속버스’는 전년과 동일한 12억 8,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민영버스 내역사업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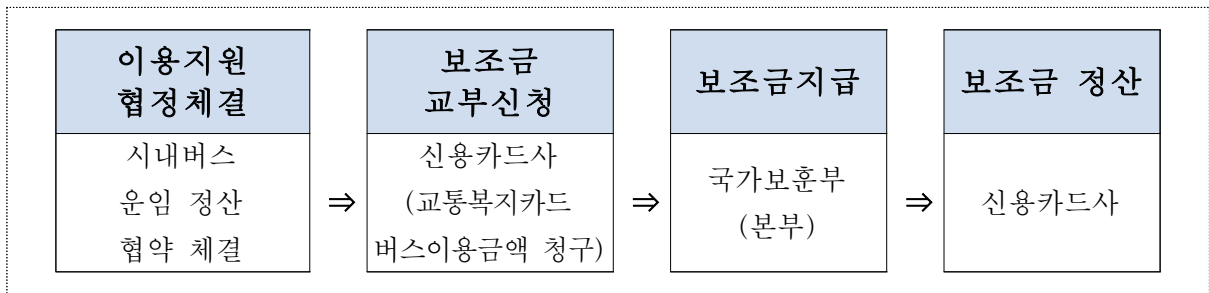
구분	'25 예산	'26 예산안	증감	산출근거
시내버스	7,200	18,247	11,047	-시내버스 미정산액 9,926백만원 (’23년 4,017, ’24년 5,909) -코로나 이후 운임실적 회복 등 반영 8,321백만원
시외·고속 버스	1,284	1,284	-	-’23년 추계액 1,222백만원+요금인상 5% 반영
합계	8,484	19,531	11,047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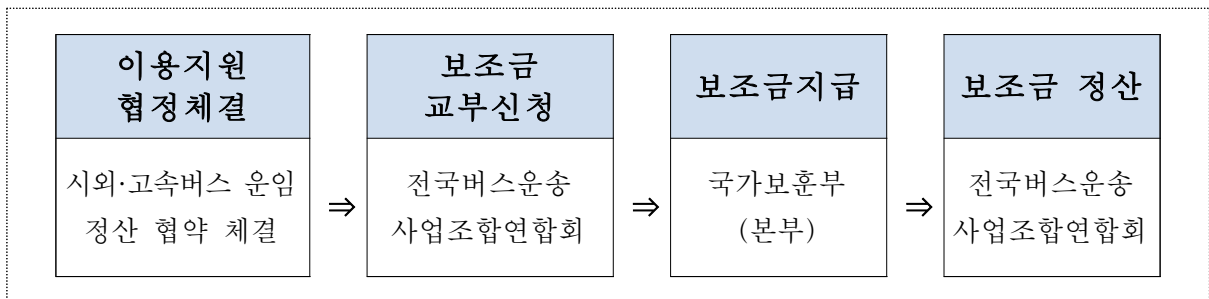
- 국가보훈부는 2022년까지 전국버스연합회와 시내버스, 시외·고속 버스를 포함하여 할인이용 계약을 체결,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는 사후정산으로 변경되었고, 시외·고속버스는 추계로 산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63)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에 대한 미지급금 누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으로, ’23년 및 ’24년 미정산액 99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증액 반영된 것임.

〈 시내버스 이용 지원 절차(신용카드사 정산)〉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 절차(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산)〉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비대면 승차권 발권 확대 및 무인 터미널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보훈부는 2024년 시외·고속버스 무인발매기 및 할인 발권 전산 연계시스템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음.

○ 기존에는 매표소에서 국가보훈등록증 확인 후 감면 혜택 적용을 받았으나, 매표소와 발매기에서 보훈번호 입력으로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받게 되었음.

○ 또한, 이용자 실적도 정확한 집계가 가능한데, 정산 방식을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정산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정액 지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2025년 현재 기준 전체 283개 터미널 중 245개 터

미널은 전산망 연동으로 집계되나, 제3자 전산망⁶⁴⁾을 사용하는 38개 터미널⁶⁵⁾은 집계가 불가하기 때문임.

□ 무인발매기 및 현장 발권 전산 연계사업은 2025년 상반기 개발 완료되어, 7월부터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데, 245개 터미널의 7월~8월 이용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쳐 1억 3,000만원 수준임.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 현황(2025년 7~8월)〉

(단위: 회, 천원)

구 분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액 총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7월	10,702	48,695	2,446	15,190	63,885
8월	11,053	50,714	2,711	16,929	67,643
계	21,755	99,409	5,157	32,119	131,528

* 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의 할인이용 내역은 미포함(38개소, '24.12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64) 국가보훈부가 연계한 전산망은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2개 전산망으로, 그 외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은 집계가 불가함.

65) 제3자 전산망 사용 터미널 현황(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자료, 2024.12월 기준)

구 분	터미널 명	개 수
특·광역시	인천 강화	1
경기	연천 전곡	1
강원	영월 상동, 평창 장평	2
충남	천안 성환	1
전북	고창 대산, 익산 금마, 임실 강진·관촌, 완주 고산·대둔산	6
경북	포항 기계·죽장, 안동 풍산·길안, 구미 해평·장천·도개·고아, 영천 신녕·고경·북안, 상주 화령, 의성 금성·안계·가음, 울진 삼근, 청송 부동·현동·부남·화북·월정·동곡, 청도 대천·운문사·청도,	25
경남	진주 반성, 산청 덕산	2
계		38

○ 245개 터미널의 2개월 실적으로 단순 계산하여 전체 283개 터미널의 연간 이용액을 추정하면 9억 1,200만원으로, 계약 금액인 12억 8,400만원과는 다소 차이가 남.

□ 또한,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19년 117,716명→'24년 110,604명)에 있고, 전국버스연합회 측의 최근 감면 추계액 현황을 보아도 8억 5,000만원~6,00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인원 및 감면 추계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상인원*	시내버스 추계액	시외·고속버스 추계액**
2019년	117,716	18,262	1,336
2020년	116,931	13,360	722
2021년	115,789	14,354	663
2022년	114,398	13,440	705
2023년	112,066	11,154(실 집 행 액)	852 / 1,222(계약액)
2024년	110,604	13,088(실 집 행 액)	861 / 1,284(계약액)

(자료: 국가보훈부)

* 전년 12월말 기준

** 추계액에는 제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 실적 미포함

□ 국가보훈부는 2023년 계약금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억 3,600만원)과 2022년(7억 5백만원) 추계액을 평균(10억 2,100만원)하였고, 제3자 전산망 사용 터미널 비율(13%, 1억 785만원),

간이 정류장⁶⁶⁾, 요금 인상률(7.5%)을 고려하여 12억 2,200만원, 2024년 계약금액은 2023년 요금 인상분(5%)을 반영하여 12억 8,400만원⁶⁷⁾으로 산출하였다는 입장임.

○ 245개 터미널의 2개월 이용액을 전체 283개 터미널 1년 실적으로 단순 계산하여 추계하는 것은 엄밀한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버스업체가 손실을 감수하며 상이유공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원 대상인원 감소, 전산 집계 실적 현황, 수송시설 간 형평⁶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적정 계약 금액 산정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국가보훈부는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2025년 하반기 이용 실적과 대상인원 감소를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전산망 통일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연계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실적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66) 간이정류장 현금승차 예상액은 2019년 7월~2020년 6월까지의 시외버스 총수입 대비 현금수입 비율(0.89%)을 적용해 745만원 반영함.

67) 2025년 예산과 2026년 예산안도 2024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됨.

68) 고속철도의 최근 5년 평균 보조율은 36.9%에 불과함.

6. 보훈병원 진료⁶⁹⁾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훈병원 정보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1억 8,700만원(14.8%) 증가한 4,504억 8,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보훈병원 진료	452,939	392,296	442,138	450,483	58,187	14.8
- 보훈병원 진료비	442,460	385,278	435,120	441,576	56,298	14.6
-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4,883	7,018	7,018	8,907	1,889	26.9
- 보훈병원 의료공백 해소(예비비)	5,596	-	-	-	-	-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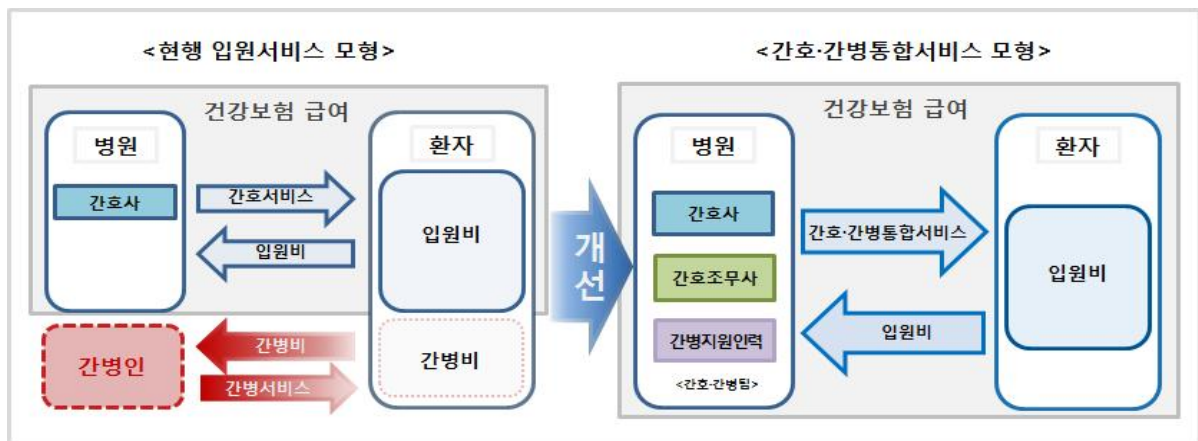
□ 내역사업인 ‘보훈병원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2025년 예산에는 국비·감면 진료비 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 25억 1,400만원이 편

69) 세부사업: 보훈병원 진료(2150-365)

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⁷⁰⁾로, 사적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기존의 입원서비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교〉



2) 검토의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의료법」⁷¹⁾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보훈병원에서도 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9월말 기준 간호간병 전환 가능 병상 수의

70)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71)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1.6%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23년 30.8% → '24년 36.7% → '25년 9월 41.6%).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병상, 25년 9월말 기준)

구 분	합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총 병상 수(A)	3,517	1,374	584	645	447	337	130
제외병상 수(B)	1,377	727	232	276	73	69	-
간호·간병 전환가능 병상 수(C=A-B)	2,140	647	352	369	374	268	130
간호·간병 병상 수(D)	890	181	201	180	120	120	88
간호·간병 운영비율(D/C)	41.6%	28.0%	57.1%	48.8%	32.1%	44.8%	67.7%
간호·간병 병상 가동률	89.0%	91.3%	93.0%	88.9%	91.75%	88.9%	80%

* 제외병상: 요양병동(638), 중환자실(104), 재활병동(462), 호스피스 및 임종(113), 폐쇄병동(60)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현황〉

(단위: 병상,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9월
병상수	581	629	659	659	785	890
운영비율	27.1	29.4	30.8	30.8	36.7	41.6

* 운영비율: '25년 간호간병 전환 가능 병상수(2,140병상)에 대한 비율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5년 국가보훈발전 실천계획'에 따르면 당초 2025년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률은 1,127병상(50%)을 목표로 하였고, 예산도 50% 확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9월말 기준 41.6%에 머물러 있는 것임.

□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결산 심사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⁷²⁾으로, 2024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진료비를 편성하였고, 2025년은 전환 가능 병상의 50%에 해당하는 468병상 확대시 증가하는 진료비를 편성하였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임.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1,299백만원	2,514백만원	미편성
편성 기준	-전환 가능 병상의 40% -(확대 병상) 242병상 -(병상가동률) 92%	-전환 가능 병상의 50% -(확대 병상 수) 468병상 -(병상가동률) 92%	-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간호간병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부담(80%)	㉡=㉠-㉢ 본인 부담(20%)		
		소계	㉣진료보상금	㉡-㉣ 환자 실부담
13,542	10,834	2,708	2,514	194

* ㉠간호간병통합병상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본인 부담금)에 대해 보훈대상자별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간호간병통합병상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간호간병병상과 일반병상 진료비 차액): (수가 차액) 86,170원 × (확대 병상 수) 468병상 × (병상가동률) 92% × (운영일수) 365일

(자료: 국가보훈부)

72)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의료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대구병원 확장을 위한 인력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병상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기간이 소요되어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보훈병원의 병상 전환율(41.6%)과 향후계획(27년까지 51%) 등을 고려했을 때 50% 확대를 위한 예산이 2025년에 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 반영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목표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은 부족한 국비·감면 진료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수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목표치 49.2% 달성을 위해서는 7억원⁷³⁾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안)〉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간호·간병 운영병상 (전년대비 증감)	935병상 (+150)	1,052병상 (+117)	1,092병상 (+40)	1,228병상 (+136)
전환가능 병상 대비 운영비율	43.7%	49.2%	51.0%	57.4%
비 고	부산(105), 대구(45)	중앙(45), 광주(44), 대구(28)	대전(40)	중앙(89), 대구(47)

(자료: 국가보훈부)

73) (수가 차액) 86,170원 × (확대 병상 수) 117병상 × (병상가동률) 92% × (운영일수) 365일 × (본인부담금) 20% = 7억원

□ 한편, 보훈병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 고령의 환자 이용이 많으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함에도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대비 저조한 실정⁷⁴⁾이므로 2026년 예산안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병상 확대에 따른 인력 확보, 시설 개선과 함께 앞으로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훈대상자의 입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7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병상 기준 종합병원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46.0%임.

7. 위탁병원 진료⁷⁵⁾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3억 7,300만원(8.2%) 증가한 2,694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위탁병원 진료	293,129	249,113	283,686	269,486	20,373	8.2
- 위탁병원 진료	290,746	246,715	281,288	267,103	20,388	8.3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2,383	2,383	-	-
- 우수위탁병원인증제	-	15	15	-	△15	순감

(자료: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에는 위탁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고령·복합 질환자가 다수인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75)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연도별 위탁병원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9월
종합병원	87	89	87	87
병원	126	125	125	124
요양병원	32	39	53	59
의원	336	448	627	657
계	582	702	892	927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 예산안에는 의원급 180개소와 요양병원 20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반기 공모 지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를 고려하여 3개월분씩 반영하여 3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신규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 편성 내역〉

의원급(180개소×37백만원×1/4분기) + 요양병원 등(20개소×302백만원×1/4분기)
= 31억 8,500만원

* 하반기 공모 지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 고려, 3개월분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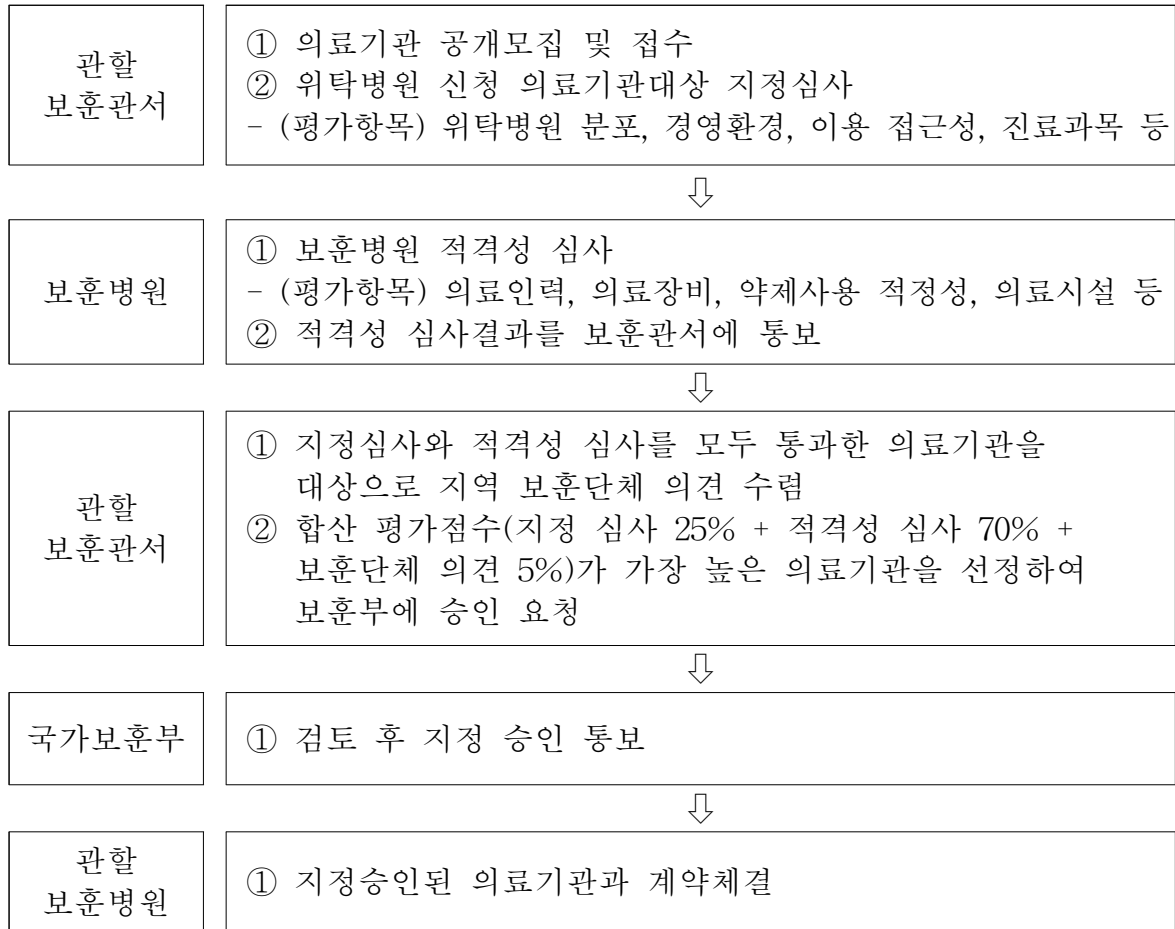
2) 검토의견

(1) 위탁병원 지정 절차 지연 개선 필요

- 위탁병원 모집 공고는 배정계획 수립 완료 후 27개 보훈관서에서
공모 - 지정·적격성심사 - 보훈단체의견 수립 - 지정승인 - 위탁진료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는데⁷⁶⁾, 당초 9월까지 지정·계약 절차를 마치고
10월부터 진료를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⁷⁶⁾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31조(위탁병원 공개모집)~제36조(계약체결)

〈위탁병원 지정 절차〉



□ 그런데, 2024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에 따라 지정된 병원 총 169개 중 지정 절차 지연으로 10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 55개, 11월 이후 진료를 개시한 병원이 58개이며, 연도 내 진료 개시를 못한 병원도 22개가 있음.

〈2024년 신규 지정 위탁병원 진료개시 지연 현황〉

모집 병원 수	지정 병원 수	10월 이후 계약체결		11월 이후 진료개시	
176개	169개	'24.10월	20개	'24.11월	28개
		'24.11월	12개	'24.12월	8개
		'25.12월	15개	'25. 1월	15개
		'25. 1월	6개	'25. 2월	7개
		'25. 2월	2개		
계		55개		58개	

(자료: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지정 절차 지연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라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지정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⁷⁷⁾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분기 내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위탁병원 확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⁷⁷⁾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탁병원과 계약시 대면 계약에서 전자 계약을 도입하여 소요 시간 단축 등

(2) 재지정 위탁병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위탁병원 지정이 늘어나는 만큼 계약 해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의 사유로는 폐업, 휴업,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의원급은 5%)에 해당하는 경우⁷⁸⁾ 등이 있음.

○ 그런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거나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위탁병원으로 재지정된 사례가 있음.

78)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38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
4. 위탁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종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 되거나 공단 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최근 3년 계약 해지 위탁병원 재지정 현황〉

재지정 연도	해지 연도	해지 사유	재지정 사유
'23년	'15년	제38조제4호(진료비 거짓청구)	-공모시 단일 응모(동일 중별 대체 가능 종합 병원 없음) -2년 경과
	'23년	제38조제5호(의료법 제64조에 해당)	-공모시 단일 응모(대체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없음)
	'23년	제38조제6호(적정성 평가 하위 10%)	
'24년	'12년	제38조제9호(위탁병원 요청)	-2년 경과
	'16년	제38조제6호(적정성 평가 하위 10%)	
'25년	'23년	제38조제9호(위탁병원 요청)	
	'15년	제38조제5호(의료법 제64조에 해당)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규정상 2년이 경과되어 재지정이 가능하거나 단일 응모 등의 사유⁷⁹⁾로 재지정하였다는 입장임.

☐ 기간이 경과하여 위탁병원 재심사대상이 될 경우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계약 해지 후 재지정된 위탁병원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9)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33조(지정대상 심사)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8. 보철구 지급⁸⁰⁾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하거나, 보철용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60억 2,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철구 지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철구 지급	5,919	6,026	6,026	-	-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845	5,845	5,845	-	-
- 보철구 지급사업 운영 등	6	6	6	-	-
-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68	175	175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 집행실적 고려 적정 지원인원 산정 필요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80) 세부사업: 보철구 지급(2150-371)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편성·집행중임.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 신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 ·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등도, 고도)
내용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u>최근 5년간 지원받은 경우 제외</u>
지원장비	· 핸드 컨트롤러, 오토박스, 휠체어 슬로프 등

(자료: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개조 주요 장비〉

구 분	내 용
좌측 엑셀 페달	· 지체장애 중 우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왼발로 엑셀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하는 개조용품
핸드 컨트롤러	· 지체장애 중 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손으로 차량의 엑셀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보조장치
오토박스	· 접이식 수동·전동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설치된 박스에 수납하도록 하는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휠체어 슬로프	·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저장화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기기

(자료: 국가보훈부)

□ 동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23년 집행률 24.8%에 이어 2024년에도 집행률이 38.9%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2025년 9월말 기준 집행률도 17.7%로 저조한 실정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3	250	62	24.8
2024	175	68	38.9
2025(9월말)	175	31	17.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1인당 평균 지원액 대비 예산 편성 단가를 과다 계상했음을 지적한 바 있어 단가는 현실화하였으나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려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기준 및 집행내역〉

연도	예산 편성기준	실제 집행내역
2023년	17명 × 1,500만원	21명(1인당 평균 295만원)
2024년	12명 × 1,500만원	27명(1인당 평균 250만원)
2025년(9월말)	12명 × 1,500만원	19명(1인당 평균 165만원)
2026년	<u>65명</u> × <u>270만원</u>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2025년 8월말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사업 안내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연말 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 그런데 홍보 이후 2025년 9월 한 달간 1건도 신청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사용연한이 다양한 보철구와 달리 보철용 차량개조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⁸¹⁾과 고령자가 많은 유공자 특성상 차량 보유 및 직접 운행하는 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지원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비율 등을 확인하여 적정 지원 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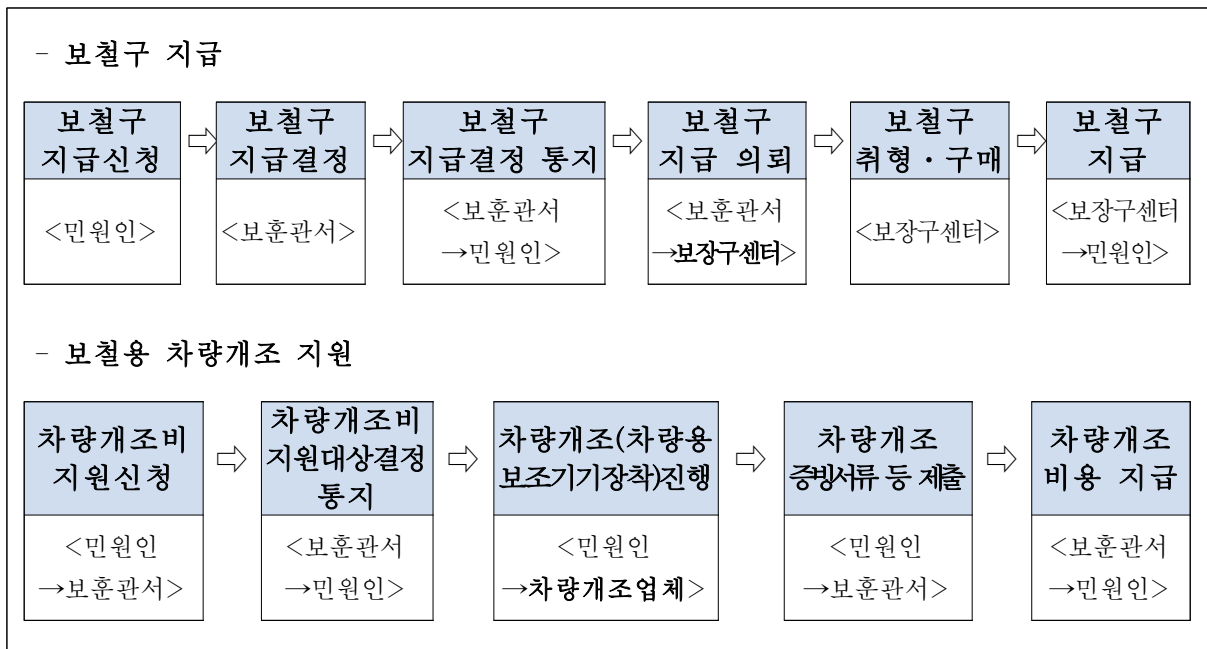
8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0조(개조비용 지급) ② 개조비용은 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마지막으로 개조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2)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마련 필요

- 보철구 지급은 보장구센터를 통해 지원하나,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은 민간 차량개조 업체에서 개조를 진행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이 유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임.

〈사업별 집행 절차〉



- 유공자가 민간 차량개조 업체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에 따라 개조 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동일한 개조 내역별로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핸드 컨트롤러’의 경우 평균 단가가 20만원 이 넘게 차이가 나고 최대 가격이 최소 가격의 3.5배 이상에 달함.
- 동일 개조 내역이라도 업체, 제품의 차이로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데, 업체별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제품의 사양·기능의 차이라면 상이

등급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인부담금 없이 1인당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는 구조인 만큼, 과다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지원 기준과 가격 기준 설정이 필요함.

〈동일한 개조 내역별 가격 편차 현황〉

(단위: 천원)

개조 내용	최대 가격	최소 가격	가격 편차
좌측 엑셀 페달	121	35	86
핸드 컨트롤러	291	80	211
오토박스	855	759	96
휠체어 슬로프	1,450	1,400	50

(자료: 국가보훈부)

□ 참고로,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⁸²⁾’은 보조공학기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제품과 판매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가격 협상 절차를 거쳐 단가가 확정되면 지원제품으로 등록함. 장애인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평가를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맞는 지원 제품을 결정 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그동안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업체 별로 가격이 상이한 보철용 차량 개조 품목의 업체 지정 또는 가격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8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20조~제24 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 차량개조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철구 차량개조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체 조건에 적합한 보조장치를 제공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임.

9. 제대군인 의료지원⁸³⁾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00만원(△2.7%) 감액된 23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제대군인 의료지원	2,365	2,365	2,301	△64	△2.7
- 보훈병원 진료	1,001	1,062	1,001	△61	△5.7
- 위탁병원 진료	1,300	1,239	1,300	61	4.9
- 보철구 지급	64	64	-	△64	순감 ⁸⁴⁾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미지급금 정산 등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동 사업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공단은 국가

83) 세부사업: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84)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은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6년부터 보철구 지급(2150-371)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한다는 설명임.

보훈부로부터 보전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최근 5년간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예산이 부족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2025	2,365	2,365	-	2,365	2,349	99.3	99.3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의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45.9%)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였음. 미지금액 27억 8,700만원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됨이 지적되었고 향후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 지적된 바 있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및 2025년 미지급금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6년의 적정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국가보훈부는 누적 미지급금 예상액을 예산액의 3배가 넘는 73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말 타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그 금액이 커서 미지급금이 2026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음.

〈제대군인 진료비 누적 미지급금 예상액〉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현액 (C=A+B)	(예상)실집행액 (D)	(예상)미지급금 (D-C)
2024	2,301	-	2,301	5,088	2,787
2025	2,301	-	2,301	6,844	4,543
계					7,330

* '25년 실집행액과 미지급금 예상액은 6월 가정산 집행액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진료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2026년 예산안은 진료비 단가 상승, 진료 인원의 증가, 위탁병원 지정 확대⁸⁵⁾ 등 진료비 지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보훈병원은 실소요의 77.3%, 위탁병원은 실소요의 29.3%만을 반영하는 등 적정 필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85) 전국 위탁병원 수는 2022년 말 582개, 2023년 말 702개, 2024년 말 892개, 2025년 9월 말 927개로 꾸준히 증가함.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인원 비교〉

연도	계 획 인 원	실 제 인 원
2022	32,691명 -보훈병원 7,522명 / 위탁병원 25,169명	34,432명 -보훈병원 6,619명 / 위탁병원 27,813명
2023	32,914명 -보훈병원 7,369명 / 위탁병원 25,545명	40,272명 -보훈병원 7,307명 / 위탁병원 32,965명
2024	24,224명 -보훈병원 6,704명 / 위탁병원 17,520명	45,298명 -보훈병원 7,001명 / 위탁병원 38,297명
2025	19,862명 -보훈병원 6,909명 / 위탁병원 12,953명	-
2026	17,860명 -보훈병원 5,488명* / 위탁병원 12,372명** * 2024년 지원인원에 2020~2024년 평균증감률을 적용 하되, 인원을 <u>실소요의 일부(77.3%)만 반영</u> ** 2024년 지원인원에 2020~2024년 평균증감률을 적용 하되, 인원을 <u>실소요의 일부(29.3%)만 반영</u>	-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 누적 방지를 위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를 강화하여 공단에의 미지급금 지급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실제 소요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⁸⁶⁾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은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사업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8억 6,400만원(830.0%) 증가한 99억 3,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사업	478	1,068	9,932	8,864	830.0
-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273	405	3,941	3,536	873.1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205	663	5,991	5,328	803.6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내역사업은 광주 보훈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확장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년차 공사비의 국비 지원액 5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사비 국비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임.

86) 세부사업: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2156-397)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공사 개요〉

구분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목적	응급실 음압격리실 확충, 수술실 확장 등을 통해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
건설 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365㎡
사업 기간	2024~2027년
사업비	18,359백만원(12,85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공사 내용 및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계
2024		293 (205)		12 (-)	305 (205)
2025		947 (663)		20 (-)	967 (663)
2026	8,259 (5,991)		912 (-)	10 (-)	9,181 (5,991)
2027	7,298 (5,992)		608 (-)		7,906 (5,992)
계	15,557 (11,983)	1,240 (868)	1,520 (-)	42 (-)	18,359 (12,851)

* 괄호 안은 국비 부담액

(자료: 국가보훈부)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은 당초 2025년 6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중 공사비 절감방안과 적정 공사 규모 재검토 등의 사유로 계획 대비 지연되어, 2025년 9월 14일 중간설계가 완료되었고 11월 현재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 중인 바, 공사기간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공사비를 고려할 때,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계획 대비 추진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	2024년 2월	2024년 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등	2024년 2월~9월	2024년 2월~7월
-설계업체 계약 추진		2024년 8월~11월
-설계 실시(계획설계)	2024년 10월~2025년 6월	2024년 11월~2025년 3월
-중간설계		2025년 4월~2025년 9월
-실시설계		2025년 9월~2026년 2월
-공사 실시	2025년 11월~2027년 1월	2026년 5월~2027년 11월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실시설계 후 착공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⁸⁷⁾」 상 공종별·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실시설계 기간(5.5개월)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예상됨.

○ 또한, 실시설계가 계획대로 2026년 2월에 종료되어 5월에 착공하더라도 공사기간 대비 공사비가 과다 편성되었는데, 전체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42.1%(8/19개월) 수준의 공정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비 국비 지원액(119억 8,300만원)의 50%에 달하는 5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음.

8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종별 설계 기간)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건축	4.5	7	9.5	7	7.5	8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은 실시설계 기간의 과소계상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과 2026년 공사 기간 대비 공사비가 과다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1.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⁸⁸⁾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장소에 지역을 대표하는 보훈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5,600만원(124.1%) 증가한 57억 5,5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보훈문화조성	14,693	14,104	14,104	16,617	2,513	17.8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0	2,290	2,290	5,755	3,456	124.1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창원시, 포항시,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동 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2024년 창원시는 2억 2,800만원, 포항시는 5억 3,200만원, 평택시는 6억 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88) 세부사업: 보훈문화조성(3145-401)

○ 그러나 2024년 창원시와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추경 편성 등의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됨.

〈 연도별 실집행 상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보훈부		사업시행주체			보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예산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1,394	760	760	-	760	2,290	534	1,294	490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228	228	228	-	228	587	-	228	23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532	532	532	-	532	1,703	534	1,066	467	
평택 평화수호 보훈문화관	634	-	-	-	-	-	-	-	-	

주) 2025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진행 진도를 고려한 예산 감액 필요

□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당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2024년 건립 부지 확정·지방비 추경 편성·건축 설계 공모 완료 및 2025년 2월 용지 보상 완료를 전제로 2025년과 2026년 2개년에 걸쳐 공사를 완공하려는 것이었음.

〈연도별 창원 진동리보훈문화관(국비 50%) 예산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총사업비 (국 비)	6,325 (3,162)	456 (228)	1,787 (587)	4,082 (2,347)
보상비	1,200	-	1,200	-
설계비	456	456	-	-
공사비	4,458	-	557	3,901
감리비	200	-	27	173
부대비	11	-	3	8

주) 2025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당초의 계획보다 늦은 2024년 7월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2025년 5월 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9월 건축 설계 공모 공고를 실시한 상태임.

국가보훈부는 작품 선정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면서 2024년에 이월된 설계비 예산 4억 5,600만원 중 1억 9,8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 착공은 2026년 10월에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 공모 후 설계 용역 착수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연내 설계 용역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착공 또한 2026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창원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3.	2024. 7.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편성 필요에 따른 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9.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2.	
건축 설계 공모	2024. 9.	-	
용지 보상 완료	2025. 2.	2025. 5	
설계 용역 착수	2024. 12.	2025. 12월 예정	
공사 착공	2025. 10.	2026. 10월 예정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부족,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이 착수되지 못함에 따라 2024년 사업주체에게 교부한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음. 이와 같이 사업 1년차부터 지방비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국가보훈부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은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도 전년도 실집행실적,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⁸⁹⁾ 2024년 교부된 금액전액이 이월된 바 있음.

□ 2025년 9월 현재 2024년에 이월된 2억 2,800만원 중 2,3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2025년 예산 5억 8,700만원은 교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국가보훈부는 연말까지 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에 이월된 2억 2,8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2025년 예산 5억 8,700만원은 2026년도로 이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내에 2024년 이월된 설계비 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2026년도에 국비 23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현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6년내에 공사를 착공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편성한 1년 차 공사비 집행이 최선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6년에 편성된 국비 예산 23억 4,700만원 중 상당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89)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진행 진도를 고려한 예산 감액 필요

-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당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건립 부지 확정·지방비 추경 편성·건축 설계 공모 완료 전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는 연차별로 20%-40%-40%로 배분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함.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국비 50%) 예산 투입 수정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총사업비 (국 비)	18,100 (9,049)	1,064 (532)	3,406 (1,703)	6,816 (3,408)	6,814 (3,406)
보상비	530	530	-	-	-
설계비	1,061	531	530	-	-
공사비	14,143	-	2,464	5,840	5,839
감리비	2,335	-	408	964	963
부대비	31	3	4	12	12

주) 2025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지방비 추경 편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건축 설계 공모 및 건축 설계 착수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착공은 빨라야 2026년 6월에 가능함에 따라 2025년에 편성된 국비 17억 300만원 중 설계비 5억 3,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포항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2.	2024. 2.	지방비 추경 편성 등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6.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0.	
건축 설계 공모	2024. 9.	2024. 12	
건축 설계 착수		2025. 5	
공사 착공	2025. 12	2026. 6월 예정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창원 보훈문화관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2026년도에 국비 34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현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기존의 1년차 공사비만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2026년에 편성된 2년차 공사비 34억 800만원은 상당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공사 착공 시점을 2026년 6월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5년 8월 결산 심사 당시에는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계속 착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 바뀌는 국가보훈부의 계획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공사 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2026년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임.

12. 현충시설 건립⁹⁰⁾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은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00만원(△2.0%) 감소한 46억 5,9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42억 5,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현충시설건립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건립	3,806	4,756	4,659	△97	△2.0
- 독립의 전당	45	4,032	4,259	227	5.6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90) 세부사업: 현충시설 건립(3146-405)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완공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음.

〈독립의 전당 사업 수정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사업기간: 2022~2027년(6년)
-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333㎡
- 주요시설 : 위패보관실, 체험학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3,348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10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373	4,146	45	4,032	99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도 예산안 42억 5,900만원은 잔여 공사비(2년차) 37억 2,300만원, 감리비 4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 5,200만원으로 구성됨.

<2026년 독립의 전당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독립의 전당 건립 : 42억 5,900만원
 - (공사비) 잔여 공사비 배분(5:5)에 따른 2년차 공사비 37억 2,300만원
 -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2년차 감리비 4억 8,400만원
 -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5,2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독립의 전당 조성사업 추진일정 지연을 감안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실시설계비 4,500만원만 집행(집행률 1.07%)하였으며, 2025년은 10월 기준 실시설계비 등 9,9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0%)하였음.
- 2024년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1억 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과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 중 설계용역 대금 3,500만원과 설계의 경제성(VE) 용역 대금 1,000만원은 2024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은 설계용역에 추가된 대금으로 완료되지 않은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2025년으로 이월하였음.
- 2025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비 등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말 기준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 상황임.

〈2024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이월 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20	20	-	20	-
- 실시설계비(420-02)	-	45	58	103	45	58	-
- 공사비(420-03)	3,404	-	△78	3,326	-	-	3,326
- 감리비(420-04)	638	-	-	638	-	-	638
- 시설부대비(420-05)	104	4	-	108	-	22	85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이월 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5)	4,032	100	-	4,132	99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0	-	20	20	-	-
- 실시설계비(420-02)	-	58	-	58	57	-	-
- 공사비(420-03)	3,404	-	-	3,404	-	-	-
- 감리비(420-04)	628	-	-	628	-	-	-
- 시설부대비(420-05)	-	22	-	22	22	-	-

(자료: 국가보훈부)

〈2022~2025년도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1.07
2025.10.	4,032	100	-	4,132	99	-	-	2.40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2023년 8월),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2024~2025년)에 걸쳐 편성하였음. 2024년 11월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 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당초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2024년 내에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밝힌 바와 달리 서울시와 사업부지 교환 관련 협의는 2025년 3월까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음. 이러한 사정 하에서 국가보훈부는 또다시 2025년 12월 공사 착공을 전제로, 전체 공사비를 2025년 31.3%, 2026년 34.4%, 2027년 34.4%로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예산안에 4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국가보훈부의 완공예정시점까지 연도별 예산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공사비	3,404	3,723	3,723
감리비	628	484	484
시설부대비	-	52	53
소 계	4,032	4,259	4,260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국가보훈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 대비 공사비를 축소하여 반영할 것을 규정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국가보훈부는 2025년 10월말 기준 입찰공고를 위해 조달청과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공사 계약을 위해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⁹¹⁾에 의하면 입찰공고만 최소 5~40일이 소요되며, 입찰공고 기간 외에 조달청에 입찰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낙찰자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공사 착공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계약 체결조차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독립의 전당 건립 추진계획 대비 집행현황〉

구분	계획	현황
공공건축 사전검토	2022.6.	2022.6.
공공건축 심의	2022.9.	2022.8.
설계용역 계약	2022.12.	2022.12.
계획설계 완료	2023.3.	2023.4.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2023.3. ~ 2023.6.	2023.3. ~ 2023.6.
도시공원위원회 협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23.10. ~ 2023.12.	2023.10. ~ 2024.8.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	2024.8. ~ 2024.9. *설계 변경에 따른 재허가
실시설계 완료	2023.12.	2025.9
공사 계약 및 착공	2024. 상반기	2025.12 목표
준공	2025. 하반기	2027. 목표

(자료: 국가보훈부)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사전 사업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2026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된 독립의전당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13.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⁹²⁾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내역사업은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외 현충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와 활성화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5,500만원(77.4%) 증액된 7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에는 LA 홍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비 58억 7,800만원의 내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2026년도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관리	6,944	6,944	10,299	3,355	48.3
-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4,075	4,075	7,230	3,155	77.4
· LA 홍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비			5,878		

(자료: 국가보훈부)

92) 세부사업: 현충시설관리(3146-406)

2) 검토의견 :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사업 관리 철저

□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내내역사업은 2023년 2월 국가보훈부가 옛 본부건물을 매입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매입 시에는 2025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광복 80주년인 2025년 8월 15일에 맞추어 개관을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은 2024년이 되어서야 총사업비 133억 9,600만원의 해외 직접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당초 사업 추진 시에는 2024년 설계 착수 - 2025년 8월 공사 착수 -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가보훈부는 2024년 편성된 실시설계비 예산 9억 3,900만원 중 2억 200만원만을 집행하고 7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5년 편성된 공사비 24억 9,000만원 또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총 사업비 133억 9,600만원은 공사비 74억 9,800만원, 설계비 9억 3,900만원, 감리비 등 15억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1년차와 2년차에 33%와 67%의 비율로 배분하였음.

〈연차별 · 비목별 총사업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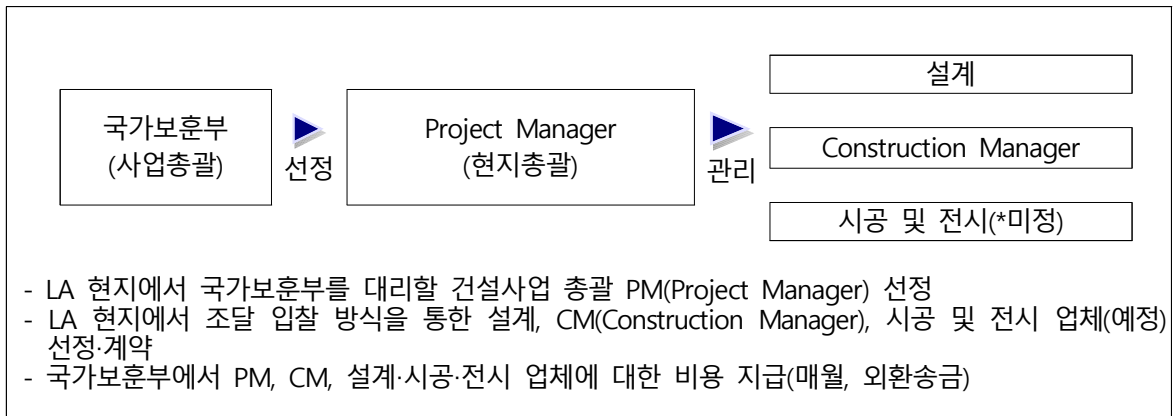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총사업비 (=A+B+C)
	예산액(A)	집행액	예산액(B)	집행액	예산액(C)	
공사비	-	-	2,490	-	5,008	7,498
설계비	939	203	-	467	-	939
감리비 등	-	-	433	196	1,070	1,503
계	939	203	2,923	663	6,078	9,940

주) 2025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집행 프로세스〉



□ 국가보훈부는 LA홍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은 해외 직접사업으로 현지 법률 검토 및 PM선정, RFP(입찰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장시간 소요되었고,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건물 추가 증축에 따른 설계 변경, 현지 역사복원 관련 규제 준수, 주거지역 용도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지구 변경 등의 특수 사정이 발생하여 지연이 발생하여 공사 완공 시점을 2026년 12월로 늦추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변경 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보다 기본 설계 완료 시기가 1달 정도 늦어지면서 국가보훈부는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당초 130일에서 107일로 단축하였음.

○ 변경 계획에 의하면 실시설계(2025. 10. 7.) 및 시공업체 우선협상(2025. 10. 10.)이 완료되어야 하나, 2025년 10월말 현재 아직까지 실시설계와 우선협상은 완료되지 않았음.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단 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실제 추진
사전 설계	'24.9.16.~'24.10.30.	'24.9.16.~'24.10.30.	'24.9.16.~'24.10.30.
개념 설계	'24.10.31.~'25.1.24.	'24.10.31.~'25.1.24.	'24.10.31.~'25.1.24.
기본 설계	'25.1.25.~'25.3.26.	'25.1.25.~'25.4.25.	'25.1.25.~'25.4.25.
실시 설계	'25.3.27.~'25.8.5.	'25.6.23.~'25.10.7.	'25.6.23.~
시공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5.6.16.~'25.8.15.	'25.7.14.~'25.9.26.	'25.7.14.~'25.9.26.
우선협상 기간		'25.9.29.~'25.10.10.	'25.9.29.~
공사착수 검토		'25.10.11.~'25.12.9.	
공사	'25.8.16.~ '26.7.31.	'25.12.10.~ '26.12.10.	
시험 운용	'26.8.1.~'26.8.15.	'26.12.11.~'27.1.11.	

(자료: 국가보훈부)

□ 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당초 연차별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2026년에 공사 완료를 전제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10월 기준 사업이 변경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026년 내에 완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임.

- 동 사업을 위해서는 LA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바, 국가보훈부는 아직 공사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임.
- 2025년 1월 국가보훈부는 2025년 7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말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캐나다산 원목이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원재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⁹³⁾ 최근 미국의 출입국정책 변화로 인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건설노동자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동 사업은 공사 지연에 따른 연내 미집행 및 이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 금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93) 트럼프, 수입 목재 10%·가구 최대 50% 관세…"산업 보호" 명분, 뉴시스, 2025.9.30.

14. 현충시설 관리·운영사업⁹⁴⁾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관리·운영사업’은 현충시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현충시설 등 실태조사,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국가보훈광장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 (28.9%) 증액된 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에는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내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 관리	6,944	6,944	10,299	3,355	48.3
- 현충시설 관리·운영	653	717	917	200	28.9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172	198	198	-	-

(자료: 국가보훈부)

94) 세부사업: 현충시설관리(3146-406)

2) 검토의견: 집행 부진 추세를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사업은 소규모 현충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인근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등을 현충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현충시설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현충시설 지킴이가 월 1회 이상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관리상태 확인, 참배안내 및 청소 등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안내판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대상 시설은 ① 소유·관리자가 기념사업회·문중·개인 등인 소규모 시설, ② 외진 곳 소재, 언론 등에서 관리 부실 등으로 지적된 시설, ③ 기타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보훈관서장이 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이며, 회당 5만원, 연간 12회까지로 시설당 연 6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함.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관리 취약 현충시설에 대하여 민간단체, 보훈가족, 인근 지역주민 등을 현충시설 자킴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

* 숭례문 방화사건('08.2.) 계기, 관리 시각지대에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개선 필요성 대두

□ 사업 연혁

- '07년부터 일부 소규모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격려금(10만원) 지급, '09년에 지킴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활동비로 연 50만원 지원

* 시설관리자 격려금 지급('07.~ '08.), 지킴이 활동비 지원('09.~현재, '19.부터 60만원)

□ 사업 개요

- (대상시설) 외진 곳 소재, 소유·관리자가 관리능력이 없는 시설 등
- (소요예산) 169백만원 * 지킴이 당 활동비 연 최대 60만원(월 5만원×12개월)
- (사업내용) 월 1회 이상 해당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및 주변 정화활동, 시설 상태 모니터링, 참배 등 실시

☐ 윤영 방식

- 연초 지킴이 선정(1월), 관할 보건관서에서 매월 지킴이 활동 보고서를 장구하고, 활동 내역을 점검한 후 분기별 활동비 지급

[illegible]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실적 및 예산액·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지급 실적 및 집행액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대상 시설의 경우 2021년 400개소에서 2022년·2023년 287개소, 2024년 286개소, 2025년 281개소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집행액 또한 2021년 4억원에서 2022년·2023년 2억 8,700만원, 2024년 2억 8,6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예상 집행액도 1억 6,86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대상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 지킴이를 선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관리 취약 현충시설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음.

<현충시설 지킴이 실적(최근 10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시설 수(개소)	월 수당
2021년	240,000	240,000	400	50
2022년	240,000	172,200	287	50
2023년	240,000	172,200	287	50
2024년	240,000	171,600	286	50
2025년(예상)	198,000	168,600	281	50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매년 관리 취약 현충시설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동 내내역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안에 지원 현충시설 330개

소를 전제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를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1년 이후 매년 대상 현충시설과 지급 실적이 감소하였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한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부적절함.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사업은 최근 집행실적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최근 집행실적에 맞추어 감액조정될 필요가 있음.

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⁹⁵⁾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장례의전 등을 지원하고, 국립묘지 외 묘소를 관리하며, 그 외 국가유공자 등의 특별 예우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 (△7.4%) 감소한 60억 4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등특별예우사업’은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00만원(△4.3%) 감소한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	6,166	6,484	6,484	6,004	△480	△7.4
-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사업	448	439	439	420	△19	△4.3

(자료: 국가보훈부)

95)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3248-415)

2) 검토의견: 재고 보유량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 주도로 문구·디자인을 통일한 명패를 제작하여 달아드리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각 연도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연차별 지원 대상은 사업 초기인 2019년·2020년에는 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2021년~2023년에는 유공자 유족을 중심으로 각각 지원하여 2023년까지 기 등록 인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4년부터는 신규 등록인원 및 기존 교부 인원의 교체 수요만 남게 됨.

〈각 연도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지원 계획〉

연도	대상	계획 인원 (예산 편성인원)	비고
2019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공상군경,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208,236명	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2020년		182,617명	
2021년	전몰·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1급~6급2항), 재일학도의용군유족, 4·19혁명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유족, 5·18유족, 특수임무유족	102,734명	유공자 유족 대상
2022년	전상군경유족(6급 3항~7급),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99,128명	
2023년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10,634명	
2024년	신규 등록자 및 교체(재교부) 신청자	10,634명	신규 등록자 및 교체 수요
2025년	신규 등록자 및 교체(재교부) 신청자	10,634명	

*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부착
(자료: 국가보훈부)

□ 기존 등록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2023년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의 2024년·2025년 부착 건수 실적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년 명패 재고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음.

〈각 연도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집행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제작건수	전년도 이월	부착건수*	잔여 물량
2019년	208,236	-	185,682	22,554
2020년	193,210	22,554	162,337	53,427
2021년	92,141	53,427	107,965	37,603
2022년	101,912	37,603	90,793	48,722
2023년	8,000	48,722	13,218	691**
2024년	10,500	691	9,012	2,179
2025년 (3분기 기준)	10,000	2,179	4,240	7,939

* 2019년~2023년 각 부착건수는 사업계획에 따른 지정대상자 교부 건수를 측정한 값으로, 동 기간 (2019~2023) 신규 등록자 및 재교부자 부착건수는 38,520명임.

** 2023년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후, 기존 잔여물량 폐기건수는 4,293개임.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의 편성인원과 동일한 10,634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명패 제작 : 3억 9,100만원 = **10,634명** × 3만 6,800원
- 홍보물 등 추진 비용 : 2,900만원 = 출장 여비 500만원 + 전달 비용 1,9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이는, 사업의 성숙도에 따른 지급대상 인원의 감소와 이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잔여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계획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구매와 지속적인 재고 누적이라는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 신규 등록인원 및 재교부 인원만을 기준으로 명패를 지급하였던, 2024년부터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연간 지급 실적은 10,000명을 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도 3분기까지의 실적(4,240명)과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고려하여 볼 때, 2025년도에도 10,0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하여 2024년 누적 재고량 2,179개가 발생하였으며, 2025년 제작건수(10,000건)에 비추어 누적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4년・2025년 신규 등록자 및 재교부자 명패 부착 현황〉

(단위: 명,개)

구분	2024년		2025년	
	분기별 실적	연간 누적	분기별 실적	연간 누적
1분기	915	915	1,534	1,372
2분기	1,457	2,372	1,646	3,180
3분기	2,369	4,741	1,060	4,240
4분기	4,271	9,012	-	-
계	9,012		-	
잔여 물량	2,179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사업 수요, 집행실적,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정책 환경의 변화, 집행실적 추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6.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국립이천호국원⁹⁶⁾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은 국립묘지의 현충선양활동 추진을 통해 국가 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900만원 (37.2%) 증가한 12억 8,600만원이 편성됨.

□ ‘국립이천호국원’은 품격있는 안장·추모 서비스 제공 및 최적의 참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이천호국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억 700만원(△73.9%) 감소한 54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및 국립이천호국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A)	추경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781	937	937	1,286	349	37.2
국립이천호국원	19,686	20,857	22,938	5,450	△15,407	△73.9

(자료: 국가보훈부)

96) 세부사업: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3250-352),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2) 검토의견

(1) 중복 편성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의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관리’는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국립묘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업무협의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동 내역사업에는 국립묘지 참배객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12개 국립묘지에 배부할 이동 카트를 일괄 구매하려는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 예산 2억 8,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당초 이동 카트 23대를 구매하여, 이를 각 국립묘지의 안장 현황과 기존 보유 카트의 노후화 수량을 고려하여 각 국립묘지별로 배부할 계획이었음.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사업 내 카트 구매 예산안 세부 내역〉

○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 2억 8,800만원 = 1,253만원 × 23대

(자료: 국가보훈부)

〈국립묘지별 이동 카트 구입 및 배부(안)〉

(단위: 만기, 대)

구분	계	서울	대전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4·19	3·15	5·18	신암
안장현황	37.1	8.8	10.6	5.4	3.6	5.0	1.0	2.3	0.3	0.05	0.01	0.1	0.01
보유량	37	-	8	5	2	2	5	5	5	2	1	2	-
취득연도	-	-	'12(1) '13(5) '21(2)	'13(3) '17(2)	'13(2)	'13(2)	'17(2) '19(2) '20(1)	'21(5)	'21(5)	'13(2)	'13(1)	'13(2)	
구매량	23	8	3	1	4	4	-	-	-	1	1	1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세부사업인 ‘국립이천호국원’의 2026년도 예산안에도 카트 2대의 교체를 위한 구입 비용이 편성되어 있어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의 예산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편성단가는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사업 내 편성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국립이천호국원’ 사업 내 카트 구매 예산안 세부 내역〉

○ 전동카트 : 3,200만원 = **1,600만원** × 2대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이천호국원이 확충사업 완료에 따라 필요로 하는 카트 소요를 별도로 요구하였다는 입장이나,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천호국원의 카트 구매 이유는 차령 15년의 노후 카트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⁹⁷⁾ 동 수요가 확충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 소요라는 답변은 타당하지 않고,⁹⁸⁾ 오히려 노후 카트를 교체하려는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사업과 중복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임.

○ 또한, 동일한 품목을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는 성격의 자산 취득 사업은 부처 차원에서 총괄하여 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97)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p.662.

98) 국립이천호국원은 노후 전동카트에 대한 교체 예산을 호국원 확충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인 2025년도 예산안에도 요구한 바 있다는 점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p.652.), 2026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노후 전동 카트 교체에 대한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립묘지 카트 구매 수요를 총괄하여 구매하려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국립묘지별 카트 구매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였어야 할 것이지 개별 국립묘지에서 별도의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이동 카트 구매를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내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에서 통합 추진하도록 하고, 중복 편성되어 있는 ‘국립이천호국원’ 관련 예산안은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음.

(2) 사업계획 수립 전 사전 절차 개선 필요

- 국가보훈부는 각 국립묘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트 수량 및 보유 카트 노후화를 기준으로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의 각 국립묘지별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입장임.
-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천호국원 사례와 같이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각 국립묘지별 사전 수요 조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배분 계획의 기준이 된 각 국립묘지의 카트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각 국립묘지별 보유 현황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립이천호국원과 국립괴산호국원의 경우, 2018년과 2024년 예산으로 각각 카트를 구매하였으나,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카트 보유량 및 취득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카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은 각각 전동 카트를 기업 등에게 기증받은 현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⁹⁹⁾¹⁰⁰⁾¹⁰¹⁾ 해당 연도의 카트 수량이 보유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99) “SK하이닉스, 국립이천호국원 참배객 수송용 전동카트 기증” (경인일보, 2018. 12. 30.), <https://www.kyeongin.com/article/1348509>

100) “보험개발원, 국립제주호국원에 참배용 전동카트 2대 기부”(FETV, 2023. 10. 12.),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49620>

101) 그 외에도 2017년 국립영천호국원, 2019년 국립산청호국원도 각각 카트 2대를 기부받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연도 카트 보유량이 기록되어 있어, 제외하였음.

<국립묘지별 카트 보유 현황 누락 부분>

연도	국립묘지	내용	비고
2018년	국립이천호국원	8인승 2대	예산 구입
2018년	국립이천호국원	14인승 전동카트	기증
2018년	국립이천호국원	전동카트 2대	기증
2020년	국립임실호국원	전동카트 2대	
2023년	국립제주호국원	전동카트 2대	
2024년	국립괴산호국원	유족 안내 전동카트	예산 구입

□ 각 국립묘지별 카트 수요조사 및 보유 현황 파악은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산출과 적정한 배분 계획 마련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보다 면밀한 준비 절차가 이행되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부실하게 수행됨으로써, 예산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구매 수량 및 각 국립묘지별 배분 수량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하지 못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과 관련된 수요 조사, 보유 현황 파악 등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전 준비 절차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7.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비 예산¹⁰²⁾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서울현충원’ 등 12개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상경비’는 각 국립묘지에 최적의 참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운영 및 환경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중 ‘피복비(210-03)’는 국립묘지 근무자에게 집례복, 안장복 등의 피복을 지급하려는 예산임.

□ 2026년도 각 국립묘지의 피복비 예산안은 총 3억 900만원으로, ‘국립서울현충원’ 5,900만원 등 각 세부사업에 피복비로 별도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각 국립묘지 ‘경상경비’ 중 ‘피복비’ 비목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립서울현충원	피복비	14	31	59	28	90.3
국립대전현충원	피복비	65	66	66	0	-
국립4·19묘지	피복비	7	7	7	0	-
국립3·15묘지	피복비	7	7	7	0	-
국립5·18묘지	피복비	15	15	15	0	-
국립영천호국원	피복비	24	24	24	0	-
국립임실호국원	피복비	25	27	28	1	3.7
국립이천호국원	피복비	12	12	18	6	50
국립산청호국원	피복비	23	25	25	0	-
국립신암선열공원	피복비	4	5	4	△1	△20
국립괴산호국원	피복비	26	26	26	0	0
국립제주호국원	피복비	22	31	30	△1	△3.2

(자료: 국가보훈부)

102) 세부사업: 국립서울현충원(3250-351), 국립대전현충원(3250-353), 국립4·19묘지(3250-354), 국립3·15묘지(3250-355), 국립5·18묘지(3250-356), 국립영천호국원(3250-358), 국립임실호국원(3250-359),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국립신암선열공원(3250-362),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국립제주호국원(3250-367)

2) 검토의견: 업무 시행지침에 반하는 피복비 단가 산정 개선 필요

□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 지급’은 국립묘지 근무자에게 집례복, 안장복 등의 피복을 지급함으로써, 담당 업무 수행 시 효율을 증대하고 국립묘지 품격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예산안은 각 국립묘지에서 근무하는 피복 지급대상 근무자 인원 및 피복 유형별 단가를 고려하여 각 국립묘지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피복 지급이 필요한 인원 외의 인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거나 국립묘지 간 피복비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을 통하여 피복의 지급기준 및 상한액을 마련하고 있음.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피복 지급기준에 따르면, 실무원, 의전단, 경비원, 운전원, 시설물관리원 등에게 안장복, 의전복, 경비복, 운전복, 작업복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피복별 단가의 상한액을 모든 국립묘지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지급대상			상한액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및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호국원	
집례복	원장, 안장·참배 담당 과장 및 팀장, 전문 집례관	소장, 부소장	원장, 안장·참배 담당 과장 및 팀장	500
안장복	작업팀원 및 안장지원팀원	실무 직원	실무원	400

구분	지급대상			상한액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및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호국원	
의전복	의전단	의전단	의전단	1,000
경비복	경비원	-	경비원	500
운전복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500
안내복	보훈미래관 및 민원안내실 안내원	기념관 해설사	기념관 해설사	300
작업복 (청소복)	청소원 및 시설물관리원, 조경관리원	청소원 및 시설물관리원, 조경관리원	청소원 및 시설물관리원	300
청원경찰	-	청원경찰	-	300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300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6년도 각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비의 예산 편성 단가를 살펴보면, 각 국립묘지 간 동일한 피복의 단가가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고, 일부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단가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가를 산정한 사례가 있음.

○ 구체적으로, 실무원에게 지급하는 안장복의 경우 다수의 국립묘지가 단가 상한액인 40만원으로 편성한 반면, 3곳의 국립묘지는 단가 상한액인 40만원을 초과하여 50만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였고, 시설환경관리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의 경우에는 동일 유형의 피복임에도 단가 금액이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최대 20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4곳의 국립묘지에서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단가를 산정하였음.

- 그 밖에, 일부 국립묘지에서는 집례복, 안내복 등의 단가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산정되었음.

〈국립묘지 2026년도 피복비 단가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집례복 (원장 등)	안장복 (실무원)	의전복 (의전단)	경비복 (경비원)	운전복 (운전원)	안내복 (해설사)	작업복 (시설환경 관리원)
상한액	500	400	1,000	500 (300)*	500	300	300
서울현충원	500	400	-	500	-	300	300
대전현충원	500	400	700	500		300	300
4·19묘지	500		-	300*		300	300
3·15묘지	-	400	-	300*	-	300	300
5·18묘지	600	400	-	350*	500	350	350
영천호국원		500	500	500	500	-	500
임실호국원	500	500	500	500	500	-	500
이천호국원	500	400	-	400	400	300	400
괴산호국원	500	400	850	500	500	-	300
산청호국원	500	500	1,000	500	500	-	300
신암선열공원	500	-	-	500	-	300	300
제주호국원	500	400	1,000	500	500	-	300

* 국립민주묘지의 경우 경비원 대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30만원 상한) 단가를 기재함.

** 음영은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지급기준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례임.

(자료: 국가보훈부)

- ☐ 각 국립묘지별로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의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동일한 피복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될 사유도 없다는 점에서, 국립묘지 간 피복 단가는 동일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된 세부 유형별 피복비 예산안은, 국립묘지 간 피복비 단가 차이를 해소하고 국립묘지 근무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그 단가를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편성된 피복비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편성단가 (A)	상한액 (B)	편성인원 (C)	초과 금액 [(A-B)×C]
국립묘지	피복				
5·18묘지	집례복	600	500	1	100
	사회복무/ 청원경찰	350	300	13	650
	안내복	350	300	9	450
	작업복	350	300	10	500
영천호국원	안장복	500	400	12	1,200
	작업복	500	300	11	2,200
임실호국원	안장복	400	500	15	1,500
	작업복	300	500	10	2,000
이천호국원	작업복	400	300	12	1,200
산청호국원	안장복	500	400	12	1,200
합계					11,0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피복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피복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일부 국립묘지에서 이와 달리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에는 단가를 통일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립묘지 근무지 피복 지급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립묘지 간에 피복비 단가를 다르게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된 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18. 국립묘지 조성¹⁰³⁾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묘지조성’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천, 횡성, 장흥 등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2,500만원(4.7%) 증가한 314억 7,4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은 강원도 횡성에 국립호국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19억 6,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등록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국립묘지조성	8,782	30,049	20,325	31,474	1,425	4.7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4,884	-	-	1,961	1,961	-

(자료: 국가보훈부)

103) 세부사업: 국립묘지조성(3250-364)

2) 검토의견: 국립횡성호국원 조성공사가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은 강원도 횡성에 국립호국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하여 6년(사업기간: 2023년~2028년) 내에 약 2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임.

〈국립횡성호국원조성 사업 개요〉

사업 위치	부지면적	조성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산46번지 일원	390,000m ² (11.8만평)	2만기	'23~'28(6년)	495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19억 6,100만원으로, 설계비(설계보상비) 3억원, 공사비 15억 5,0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설계비 3억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 따른 설계보상비로 집행할 예정이고, 공사비, 감리비 등은 2026년 10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함으로써 집행한다는 계획임.

〈2026년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예산안	1,961	300	1,550	100	11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해당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5년 6월
 중간설계 완료 후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았고(2025년
 9월 22일), 그 결과 공사비 6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어, 2025년
 10월 말 현재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 시행을 요청 중인 상황임.

○ 당초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는
 495억원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공사비 65억원을
 증액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인 500억 원 이상(495억원
 →560억원)이 되므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하게 되었음.¹⁰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총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u>495→560</u>	29	40	387→452	38	1

* 공사비 증액에 따라 감리비 및 부대비도 추가 증액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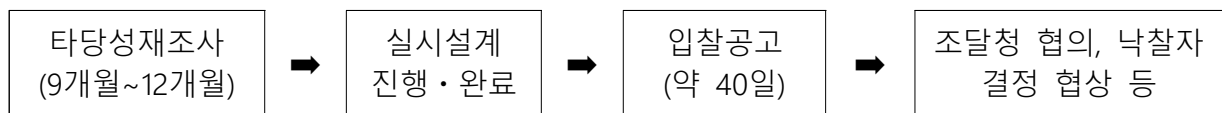
□ 이로 인하여, 동 사업은 향후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
 절차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타당성재조사 기간 및 후속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내 계획하였던 조성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0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¹⁰⁵⁾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이후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도 공사 입찰 계약 진행을 위해서는 입찰공고 40일,¹⁰⁶⁾ 그 외 조달청 검토·협의를, 낙찰자 결정 후 협상 및 계약과정을 고려하면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사 입찰계약은 계획된 2026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공사계약 체결 전 향후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관련하여,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타당성 평가에만 약 1년의 기간(2023년 7월~2024년 7월)이 소요되었음을 참고할 때, 실시설계 진행 기간과 입찰계약 과정의 절차 등까지 고려하면

10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③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1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사업은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시협약 추진 등을 진행하게 되어 이미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동 사업의 공사에 약 720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만일 2026년 내 조성공사가 착공되지 못한다면 2028년 내 준공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호국원 안장대상자의 안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가보훈부는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의 2026년 내 공사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국립묘지 안장여력이 적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9.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¹⁰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7,700만원 (△12.0%) 감소한 152억 3,300만원이 편성됨.

○ 내역사업인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41.3%) 감소한 7,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18,273	17,310	15,233	△2,077	△12.0
- 제대군인수업료지원	63	121	71	△50	△41.3

(자료: 국가보훈부)

107) 세부사업: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4160-390)

2) 검토의견: 예산 감액 규모 과다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역량강화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대학입학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일정 생활 수준 이하 가구의 고교취학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의 경우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¹⁰⁸⁾인 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취학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큰 편차가 없으나,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자녀 수업료 지원은 대상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집행액은 2020년 8,500만원(인당 평균 147만원)에서 2024년 1,500만원(인당 평균 375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임.

108)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교 수업료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2020	85	119	1.40	58	85	1.47	27	34	1.26
2021	49	96	1.96	14	53	3.79	35	43	1.23
2022	42	81	1.93	11	45	4.09	31	36	1.16
2023	28	59	2.11	7	32	4.57	21	27	1.29
2024	40	63	1.58	4	15	3.75	36	48	1.33
2025.10	48	74	1.55	7	28	4.01	41	46	1.13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모두 지원금액 한도 없음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감소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2025년보다 5,000만원 감소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25년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감액 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집행액이 2023년 2,700만원, 2024년 4,8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7,400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⁰⁹⁾ 2026년에 편성된 금액 7,100만원은 2025년 10월 기준 집행액보다도 적은 금액임.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28세로,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

109)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2022년 4,640명 → 2024년 5,902명)

에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바,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예산 감액 보다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6)은 대학교 수업료 지원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최근 3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연 평균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7,508	9,170	7,639	9,481	10,388
장기복무 전역자	15,962	5,321	4,640	5,420	5,902
중기복무 전역자	11,546	3,849	2,999	4,061	4,486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도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중기복무 제대군인 미취업률〉

(단위 : 명 / 2025.3.31. 기준)

전체 중·장기복무 회원 등록자	전체 중기복무 회원 등록자(A)	중기복무 등록자 중 미취업자(B)	중기복무 등록자 미취업률(B/A)
123,511	40,828	14,802	36.3

(자료: 국가보훈부)

20. 제대군인전직지원금¹¹⁰⁾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100만원(29.8%) 증가한 95억 8,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1,923	7,382	9,583	2,201	29.8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전년과 동일한 58만원으로,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도 1인당 월 지급액은 전년과 동일한 81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¹¹¹⁾

110)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11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2026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안 세부내역〉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합 계	70억 500만원	73억 8,200만원	95억 8,3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 6개월 × 1,705명 × 91.5% = 51억 4,800만원	58만원 × 6개월 × 1,705명 × 91.5% = 54억 2,900만원	58만원 × 6개월 × 2,414명 × 80% = 67억 2,1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 6개월 × 454명 × 88.5% = 18억 5,600만원	81만원 × 6개월 × 454명 × 88.5% = 19억 5,300만원	81만원 × 6개월 × 736명 × 80% = 28억 6,200만원

(자료: 2024년, 2025년 및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재구성)

□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2~2024년 3년 평균 신청자 수’를 적용하여 장기복무자 736명, 중기복무자 2,414명으로 산출하였는바, 2025년 8월 기준 지급인원이 장기복무자 842명, 중기복무자 2,190명으로 지급인원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예산 조기 소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2025년 8월달 기준 인원을 가정하면 예상 집행액은 약 93억원임.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신청자 수〉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장기복무자	559	712	937	736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414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의 연도별 계획인원 및 지급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8.
계 획 인 원 (A)	장기복무자	394	376	454	454
	중기복무자	1,802	1,710	1,705	1,705
지 급 인 원 (B)	장기복무자	559	712	937	842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190
차 이 (=A-B)	장기복무자	△165	△336	△483	△388
	중기복무자	△114	△826	△1,084	△485
	소 계	△279	△1,162	△1,567	△87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전직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필요

- 연도별 보훈대상자 현황을 살펴볼 때,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엽제 관련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더 이상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여지가 적어 추후 보훈대상자의 증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중기, 장기 제대군인 현황〉

연도	계	중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18	6,392	2,851	3,541
2019	5,681	2,704	2,977
2020	5,664	2,132	3,532
2021	7,278	2,840	4,438
2022	8,701	2,830	5,871
2023	9,420	3,256	6,164
2024	10,388	4,486	5,902
2025.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및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군 인사체계의 특수성으로 비자발적 조기전역을 해야 하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¹¹²⁾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2008년 구직급여(상한액 월 120만원)의 41.7% 수준인 50만원에서 지급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이

1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르러서야 7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5년 81만원까지 인상되었고, 중
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도 2014년부터 2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1년까지 지급단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오다 2022년에 50
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5년에 58만원으로 인상되었음. 반면, 고용노
동부의 구직급여는 2008년 월 120만원에서 2018년부터는 65% 인상
된 월 19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장기복무자의 1개월 전직지
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40.9%,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29.3%에 불과함.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 비교〉

구 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4조
대상자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 중기자 평균연령 29.1세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지급신청 기간	전역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액	중기 : 58만원(구직급여 29.3%) 장기 : 81만원(구직급여 40.9%)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1,980천원
지급 상한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중도취업자 지원	일시금 : 잔여지급액의 1/2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1/2이상자의 잔여지급액 1/2
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가입

(자료: 국가보훈부)

〈고용부 구직급여 상한액 (천원)〉

구분		’08~’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전직 지원금 월지급액	중기복무자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580	580
	장기복무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810	810
구직 급여	월 상한액	1,200	1,200	1,200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증가율(%)	-	-	7.5	16.3	20	10	-	-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평균연령은 28세로 장기간 사회와
의 격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취업·교육·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데 그쳐 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중·장기복무자 제대군인 지원 비교〉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9년)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 권장사항
	의 료 지 원	■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취 업 알 선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직 업 훈 련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사이버교육 실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취 업 알 선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지원 (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전직지원금 지급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 중기(월 55만원), 장기(월 77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취 업 지 원	■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추진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교 육 지 원	■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후 3년 이내자
		■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 이하자
	의료지원	■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대부지원	■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금액 : 300~8,000만원, 상환기간 : 3~20년(연리3.5~4.5%)
	주택분양	■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07.8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공공시설의 이용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고궁·능원·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안 장 지 원	■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지급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019. 10. 1. 시행)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되었음.

〈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등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전직지원금 확대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최고액의 50/100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 국가보훈부 또한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기복무자 : 6개월 →7개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히면서, 2026년에는 중기복무자 78만원, 장기복무자 9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또한,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한 전직지원금 예산 또한 반영되지 못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8월 기준 지급인원이 2026년에도 그

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6년 예상집행액은 편성액보다 적은
바, 국가보훈부의 지원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빈약했던 것으로 해
석될 여지도 존재함.

-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
요가 있으며,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¹³⁾

113)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하여 전직지원금 지급
을 위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 상태이며, 2025년 현재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전직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밝힘.

21.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¹¹⁴⁾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6·25참전유공자의 희생을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명비를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00만원(△19.5%) 감소한 2억 8,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참전기념 행사	2,300	2,177	2,262	85	3.9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344	353	284	△69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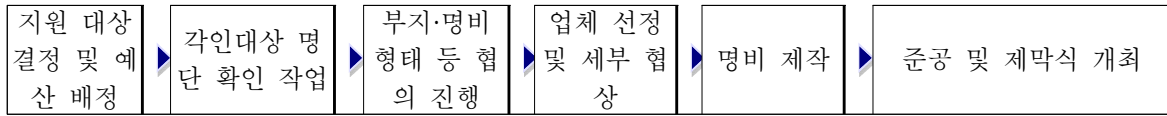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부)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지자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명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¹¹⁵⁾

114) 세부사업: 참전기념행사(4161-420)

115)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호국영웅 명비 건립 사업 지원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초·중·고교와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2024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장한 바 있음.

- 2024년에는 지역별 명비 건립에 2억 6,000만원(2개소), 초중고 명비 건립에 9,300만원(2개소), 대학교 명비 건립에 3억원(3개소) 등 총 6억 5,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는 대학교 명비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지역별 명비 건립에 2억 5,300만원(2개소), 초중고 명비 건립에 1억원(2개소)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2026년에는 지역별 명비 건립에 1억 8,400만원(2개소), 초중고 명비 건립에 1억원(2개소) 등 총 2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빠른 사업 진행 필요

□ 2025년 명비 건립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8건 중 2025년 10월 현재 완료된 건은 4건에 불과함. 완료된 4건 중 3건은 2024년에 이월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2025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사업 5건 중 1건만이 완료된 상태임.

○ 미완료 4건 중 건립에 착수한 곳은 2건이고, 나머지 2건은 아직 계약 체결조차 못한 상태임.

○ 계약조차 못한 2건에 관해 국가보훈부는 10월말~11월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0월말~11월 계약 체결을 가정하더라도, 평균 공사에 65일~81일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2025년 내에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2025년 사업 진행 현황〉

연번	구 분	건립 대상	진행상황
1	대학교 (‘24년 이월)	연세대	- 7.23. 준공 및 제막식 개최
2	대학교 (‘24년 이월)	부산대	- 건립 업체 계약 체결 진행 중, 12월 둘째 주 준공 및 제막 예정 * 계약체결(10.24.예정) → 준공 및 제막식(12월 둘째주 예정)
3	대학교 (‘24년 이월)	조선대	- 9.19 준공 및 제막식 개최
4	초·중·고	용산고	- 3.24 준공 및 제막식 개최
5	초·중·고	여수고	- 건립 착수(9.23), 12월 중 준공 및 제막 예정
6	초·중·고	김해 장유중	- 건립 착수(9.18), 11월 초 준공 및 제막 예정
7	초·중·고	서산 부석초	- 건립 업체 계약 체결 후 12월 초 준공 및 제막 예정 * 계약체결(10.29.예정) → 준공 및 제막식(12월 첫째주 예정)
8	지역	대구 남구	- 건립 업체 입찰공고 진행 중, 계약 체결 후 준공 예정 * 계약체결(11월 초) → 준공(12월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명비 건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대학교 명비 건립은 각인대상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 학적부 명단과 보훈부 참전유공자 명단을 대조하는 등의 작업, 학내 의견 수렴, 학사 일정과의 조율 등에도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초중고 및 지역 명비 건립은 부지·명비 형태 등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연내에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2.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¹¹⁶⁾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200만원(3.3%) 증액된 82억 5,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9,342	7,991	8,253	262	3.3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2,673	2,387	2,387	-	-
· 후손교류사업	1,121	1,285	1,285	-	-
· 참전국 후손장학사업	382	393	393	-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유엔참전국 후손사업’은 ① 후손교류사업, ② 참전국 후손장학사업, ③ 유엔참전국 글로벌아카데미 등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① ‘후손교류사업’은 유엔참전용사 후손 및 국내 대학생 교류 캠프(국내·외 각 1회) 및 참전국 역사교사 총회를 개최하는 내내역

¹¹⁶⁾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2억 8,500만원이 편성됨.

② ‘참전국 후손장학사업’은 저소득 참전국 및 국내 유학중인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내역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9,300만원이 편성됨.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 (2025 본예산) 2,387 → (2026 예산안) 2,387백만원
- (예산) 후손 교류캠프, 후손 장학사업, 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사업 지원 비용 등 반영
- (산출) ① 후손교류사업 1,285백만원(캠프 828백만원, 참전국 역사교사 총회 450백만원, 공항영접 및 환송 3백만원, 캠프 및 총회 현장점검(17백만원), 업무협의 4백만원(14명×30천원×10회))
② 참전국 후손장학사업 393백만원 국외장학금 306백만원(850명×0.36백만원), 국내장학금 81백만원(22.5명×300천원×12월), 장학물품 구입 등 6백만원
③ 유엔참전국글로벌아카데미 692백만원(학교운영비 500백만원(25개교×20백만원), 관련행사 개최 등 192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후손교류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지양 필요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후손교류사업’ 중 하나인 ‘후손캠프사업’은 유엔참전국의 후손 국내 초청 캠프와 국내 후손들의 참전국 방문 캠프를 통해 미래세대간에 직접 교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은 8억 2,8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유엔군 참전으로 맺어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참전국 후손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1년에 국내캠프와 국외캠프를 각각 1번씩 개최함.

□ 최근 5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참전용사 후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2024년과 2025년은 참전용사 후손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함.

○ 2025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참가학생 100명 중 참전용사 후손은 40명, 한국인 참가학생 50명 중 참전용사 후손은 5명으로, 총 참가자 150명 중 참전용사 후손은 45명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국내캠프 참여인원 〉

2025	UN참전국학생(외국인)		국내학생(한국인)		계
대 학	美 동부 명문대학교 재학생 (하버드 등 14개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15개국)	국내 대학교 재학생 (전국 11개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국내 참전용사 5명)	
인원	60	40	45	5	
150					

2024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국외참가자 및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국내 대학교 재학생 (전국 41개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인원	61		67	20	
148					

2023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해외참가자		국내 대학교 재학생(전국 21개교)		
인원	72		62		
134					

2022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해외참가자		국내 대학교 재학생(전국 15개교)		
인원	44		48		
92					

2021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해외참가자		국내 대학교 재학생		
인원	50		36		
86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재외공관·참전협회 등을 통해 추천된 영어소통 가능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발자 대비 신청자 수가 차이가 거의 없는 등 제도의 홍보가 부진한 것도 참전용사 후손 참여 부진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신청자수 대비 선발자수(신청자수 / 선발자수)〉

2021	2022	2023	2024	20'25
126 / 126	136 / 136	196 / 196	239 / 238	254 / 25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후손캠프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전용사후손 등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참전용사후손 참여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참전용사후손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후손 장학사업의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액 조정 필요

-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내역사업 중 ‘후손 장학사업’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참전국과의 미래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참전용사 후손에게 학습장려금을 지원하려는 내내역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3억 9,3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국내 대학(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후손에게는 월 3만원을 지원함.
- 2026년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 재학 후손 22.5명에 8,100만원을, 국외 대학 재학 후손 850명에게는 3억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매년 예산이 감액되어 왔는데, 국외 후손 장학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예산액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국내 후손 장학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매년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2026년 예산의 경우 40% 이상의 불용이 예상됨.

〈최근 5년간 국외 후손 장학사업 집행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0
총계 (지원인원)	289백만원 (803명)	287백만원 (799명)	298백만원 (830명)	305백만원 (848명)	247백만원 (814명)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5년간 국내 후손 장학사업(국내 유학생 지원) 집행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0
총계 (지원인원)	81백만원 (22.5명)	72백만원 (20명)	69백만원 (19.2명)	54백만원 (15명)	43백만원 (12명)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10월 기준 집행액을 살펴보면, 국내 후손 장학사업은 12명에게 4,300만원을 집행함. 이미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2025년말까지 집행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국내 후손 장학사업은 2021년 22.5명에게 8,100만원을 지원했으나, 그 후로 집행액이 계속 감소하여 2024년에는 15명에게 5,400만원 집행에 그침.
- 국가보훈부는 ‘후손장학사업’ 대상자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앞으로 다른 대학교 재학생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학습장려금의 단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저개발국가 학생 초청 장학금 지급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습장려금이 일반 저개발국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보다 적은 것을 감안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학습장려금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개발 국가 대학생 장학금 및 학습장려금 지급 현황〉

구 분	KDI대학원 저개발국 대학생 장학금	국가보훈처소관 유엔참전용사 후손 학습장려금	일본 JAICA
매월 지원액	매월 \$1,000	매월 30만원	매월 \$2,500

(자료: 국가보훈부)

(3) 성과지표 추가 필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이 중 유엔참전국 후손장학사업 내역사업과 유엔참전용사추모 평화음악회 내역사업, 미래평화학술회의 내역사업, 유엔참전국내 기념행사 내역사업 등 4개 내역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민간보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보조	한국전쟁 기념재단	81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보조	(사)호국문화 진흥위원회	-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보조	한미동맹재단	145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유엔참전국내기념행사	보조	6·25전쟁관련 민간단체	18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세부사업은 2020년까지 성과지표로 ‘참전국교류행사 참여인원’을 사용하다가, 2021년부터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주관계기행사 참여자 한국 호감도’를 사용 중임.

〈최근 5년간 성과지표 내역〉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5	'26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참전국교류행사 참여인원 (단위: 명)	목표	300	310	320					행사별 초청인원합산	초청행사 결과보고서
	실적	307	-	-						
	달성도	102.3		-						
민간주관계기 행사참여자 한국호감도 (단위: 점)	목표	-	86	86.5	91	91.5	92	92.5	조사기관 의 뢰 민간주관 행사 참여자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87	90.7	91.2	91.7	-	-		
	달성도	-	101.2	104.9	100.2	100.2	-	-		

(자료: 국가보훈부)

- 성과지표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사업 성과지표로 현재 지표에 ‘더하여’ 참전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 및 친밀도 등 국위선양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라고 지적하였으나, 국가보훈부는 기존 성과지표에 추가가 아닌 기존 성과지표를 삭제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추가함.

- 기존 성과지표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 제도개선 실적에 ‘만족도 항목에 호감도 항목을 추가’하였다고 허위 기재함.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이행 여부〉

2020년 평가결과	반영여부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실적
· 평가결과: 감축, 사업방식 변경		
· 주요 지적사항: ③ 사업 성과지표로 현재 지표에 더하여 참전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 및 친밀도 등 국위선양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필요	반영	③ 성과지표 변경 - 민간주관계기행사 참여자 만족도 항목에 ‘호감도’ 항목을 추가하여 국위선양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변경

(자료: 국가보훈부)

-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에 사용하던 ‘참전국교류행사 참여인원’ 등 정량적인 지표를 복원하여 현행 ‘민간주관계기행사 참여자 한국 호감도’ 지표와 함께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3. 송무지원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송무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 소관 소송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하여 보훈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 증가(40.7%)한 5억 6,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송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송무지원	441	398	560	162	40.7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패소사건 소송비용’은 행정청 패소 시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소송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800만원 증가한 3억 2,600만원이 편성됨.

〈패소사건 소송비용 상세 편성 근거〉

- 최근 3년('22~'24년)간 평균 패소비용 지급 건수(48건) × '25년 기준 평균 패소비용(6.8백만원) 반영 = 326백만원
- 패소비용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며, 최근 평균 패소비용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5년 평균 패소비용으로 산출
- ※ (평균 패소비용, 백만원): ('22년) 4.6 → ('23년) 5.1 → ('24년) 5.6 → ('25년) 6.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패소사건 소송비용을 패소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패소비용 지급건수(48건)'를 사용한 반면, 소송비용은 평균 패소비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3년이 아니라 '2025년 기준 평균 패소비용(68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설명함.

2) 검토의견: 패소 원인 분석 등 대책 강구 필요

- 국가보훈부의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소송 패소율 및 평균 패소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행정소송 패소율의 경우 2022년 7.0%, 2023년 8.1%, 2024년 8.7%, 2025년 상반기 기준 10.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평균 패소비용 또한 2022년 460만원, 2023년 510만원, 2024년 560만원, 2025년 상반기 기준 68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국가보훈부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6.
처리 건수(A)	428	419	391	184
패소 확정 건수(B)	30	34	34	18
패소율(=B/A)	7.0	8.1	8.7	10.0
패소비용 지급 건수(C)	57	43	43	33
패소비용 지급액(D)	261	220	239	226
평균 패소비용(=D/C)	4.6	5.1	5.6	6.8

주: 패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이 곧바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연내 패소 확정 건수와 연내 패소 비용 지급 건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소송비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2025년 상반기 평균 패소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가 근거자료로 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 산정내역은 2020년 12월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나, 2025. 1. 1.부터 대법원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송진행 중 감정료가 2배로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 예산부터 패소비용 단가를 인상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최근 5년간 심급별 패소비용을 살펴보면, 1심 패소로 확정된 사건은 연평균 310만원~460만원, 2심 패소로 확정된 사건은 610만원~940만원, 대법원에 상고하여 패소비용이 발생한 사건은 870만원~1,050만원으로 나타남.

- 피고 항소 시 국가보훈부의 패소율은 연평균 56~78%이고, 피고 상고 시 국가보훈부의 패소율은 100%임.

〈각 심급별 사건 처리 결과〉

연도	심급	접수	처리				진행 중	패소비용 (사건당 평균비용)	심급별 패소비용	피고 항소 시 패소율	피고 상고시 패소율
			피고 승소	피고 패소	취하 117)	조정-취 하118)					
2021	1심	478	361	31	44	27	15	4.7	3.1	58%	100%
	2심	33	19	12	1	1	-		6.1		
	3심	11	9	2	-	-	-		10.5		
2022	1심	447	307	38	44	12	46	5.2	3.6	56%	100%
	2심	35	15	19	-	1	-		6.6		
	3심	11	9	2	-	-	-		10.3		
2023	1심	397	231	35	34	11	86	7.1	4.6	78%	100%
	2심	33	8	24	-	-	1		9.4		
	3심	11	7	4	-	-	-		8.7		
2024	1심	380	121	14	26	6	213	9.3	-	58%	100%
	2심	42	11	21	-	2	8		8.8		
	3심	13	5	7	-	-	1		9.7		
2025	1심	207	10	-	3	-	194	-	-	-	100%
	2심	19	1	1	-	-	17		-		
	3심	8	2	1	-	-	5		-		

(자료: 국가보훈부)

- 즉, 패소비용이 증가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국가보훈부가 항소 제기한 사건이 많아지고 항소 또는 상소 시 패소율이 높은 점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의 행정쟁송 사건의 대부분은 질병·부상의 공무원관련성(요건) 및 상이등급 심사와 관련되는바, 2023년 이후 주요 패소 확정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과의

117) 원고가 단순 소취하한 사건만 기재

118) 조정이 성립한 사건 및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사건 기재

해석의 차이, 의학적 진단 결과(상이의 정도 등) 증거 판단 등에서의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이 주된 패소 원인으로 나타남.

〈2023년 이후 국가보훈부 주요 패소 확정 사건 현황〉

(단위: 원)

연도(사건번호)	패소 원인	패소비용
2023년(2020구단79403)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4,663,991
2023년(2021구합31939)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	13,408,150
2023년(2021구단21617)	독립유공자의 사실상 손자녀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3,846,380
2024년(2021구단59727)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3,901,292
2024년(2021누11809)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5,720,670
2024년(20구단102053)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4,252,770

주: 연도별 패소비용이 가장 큰 3개의 사건에 대하여 작성

(자료: 국가보훈부)

○ 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된 사건의 경우,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판례 경향 및 패소 세부 원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심사에 적용되도록 할 필요도 있음.

□ 국가보훈부는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판례 경향 및 패소 세부 원인 분석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심사기준 등에 반영하여 유사 사건의 경우 최근 판례와 비슷한 결

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속·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 권고(소송비용 각자 부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II. 보훈기금

1.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¹¹⁹⁾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제복군무 중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유가족이 가족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16.0%) 증가한 10억 1,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602	875	1,015	140	16.0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24세 이하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시작되어 ('24) 6억 1,700만원 → ('25) 8억 7,500만원 → ('26안) 10억 1,500만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음.

119) 세부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2160-473)

-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힐링캠프 2억 3,000만원, 국제 교류캠프 3억 3,500만원, 멘토링 활동 지원 3억원, 소통채널 운영 및 기타 행사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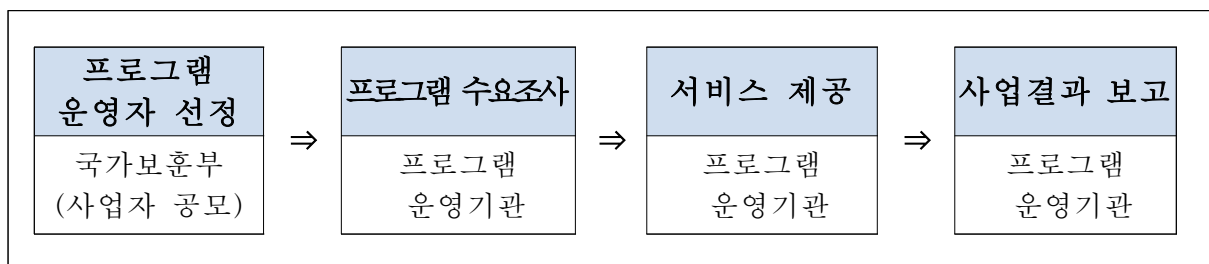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산출근거
히어로즈 패밀리 네트워크 구축	국내 프로그램 및 소통채널 운영	380	-힐링캠프 등 230 -이벤트 100 -소통채널 운영·관리·홍보 50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국제 교류캠프 운영	335	-자녀 등 25명×13.4
히어로즈 패밀리 멘토링 및 정서지원	멘토링 활동 및 상담·컨설팅 지원	300	-멘토링 운영관리 50 -멘토링 활동 및 상담·컨설팅 지원 250 (100명×625천원×4회)
합계		1,015	

(자료: 국가보훈부)

- 사업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만을 담당하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구조로, 연초에 연간사업을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사업 집행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국가보훈부의 관리·운영 책임 강화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에는 연간사업 대행용역 1건과 국제교류캠프 용역 1건을 각각 계약 체결하였고, 2025년에는 네트워킹, 국제교류캠프, 멘토링 등을 포함한 연간사업을 과업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2024년~2025년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 현황〉

구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준)	수탁기관	계약 기간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2024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대행 용역	329백만원	(주)위드바톤	2024.3.~12.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히어로즈 키즈 특사 파견 (국제교류캠프)	245백만원	티앤코리아(주)	2024.3.~12.	일반경쟁→ 수의 (협상에의한계약)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대행용역	825백만원	(주)위드바톤	2025.3.~12.	일반경쟁→ 수의 (협상에의한계약)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이므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대행시키되, 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 공식 소통채널인 누리집 관리, 멘토 모집 관리, 성과 점검 등은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안내 및 의견 접수 등을 담당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전담 사무국을 용역 대행사의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매년 용역 계약을 체결하므로 업체가 변경될 경우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됨.
- 소통채널 누리집¹²⁰⁾ 운영도 업체에 맡김으로써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데, 프로그램 신청 등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함에도 가입자 수는 2025년 10월 기준 대상 인원의 14%인 70명에 불과함.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대상자 대비 소통채널 가입자 수〉

구분	2024년 말		2025년 10월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프로그램 대상자 수*	231가구	586명	195가구	498명
소통채널 가입자 현황	61가구	67명	64가구	70명

*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24세 이하 자녀와 그 보호자

(자료: 국가보훈부)

- 멘토링의 경우 1:1 청년멘토 멘토링¹²¹⁾을 운영하여 소정의 활동비와 봉사활동 시간 부여로 청년 멘토를 모집하고 있으나, 일정 협의 등의 사유로 중간에 멘토링이 중단되거나 멘토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면 멘토의 자격 검증이 충분히 될 필요가 있음.

120) <http://heroesfamily.ninetysoft.com/>

121) 멘토링은 명예멘토 클래스와 청년 멘토 1:1 멘토링이 있고, 청년 멘토링은 2024년 20명, 2025년 19명이 참여함.

- 국가보훈부는 용역 수행업체에 전담시키는 사업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보훈부가 사업 총괄 및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회성 프로그램 지양 필요

- 프로그램을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힐링캠프, 국제교류 캠프와 같이 소수의 인원에만 대한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2026년 예산안의 증액(1억 4,000만원) 내용도 힐링캠프(7,000만원), 국제교류 캠프(5,000만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심리·정서 지원 강화로 보기에 부족함.
- 국내외 여행·체험을 통해 얻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사 대행 업체를 통한 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전문기관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복 참여자가 많다는 점에서 참여 의지가 있는 유가족만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외에도 교류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행사별 참여자(중복자) 수〉

구분	힐링캠프	국제 교류캠프	멘토링	이벤트	계
24년	57명(49명)	16명(10명)	82명(70명)	146명(135명)	301명(264명)
25년	49명(41명)	20명(9명)	122명(112명)	182명(172명)	373명(334명)

* 괄호 안의 인원은 프로그램 간 중복 참여 인원임.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소수 대상자에 한정된 행사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보다 전문적인 정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¹²²⁾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령 독거유공자 대상 AI 기반 통합안부확인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¹²³⁾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은 5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	-	552	552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일반국민 대비 높은 1인 거주 비율, 전쟁 트라우마 등 고독사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일반국민 대상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사업과 별개로 국가유공자 대상 국가보훈부 중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122) 세부사업: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2160-476)

1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검토의견: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 민간기업과 MOU를 통해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보보안심콜¹²⁴)을 추진하고, 2025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¹²⁵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대상으로 1인 가구 취약계층 중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8,522명을 선정하고, 고독사 위험군 판단지표를 토대로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4단계로 분류하였음.

〈국가유공자등 고독사 예방 관련 추진경과〉

- (‘24.8) 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 「보보안심콜」 시범사업 시행(수발신)
- (‘25.3) 판단지표 개발 및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25.4~8)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5.8) IoT(문열림센서)를 추가해 더 정밀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수발신+문열림)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고독사 관리대상 현황〉

고독사 관리대상	독거가구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미수혜
8,522명	주민등록상 1인가구 157,752명	9,654명	재가복지서비스, 요양급여 미수혜 8,522명

(자료: 국가보훈부)

〈고독사 위험군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체 조사대상	위험군				의심군	사망 등
		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인원	8,522	3,309	685	1,293	1,331	3,727	1,486
비율	100	38.8	8.0	15.2	15.6	43.7	17.4

(자료: 국가보훈부)

124) 스마트폰에 AI기반 통합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125) 현관문,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 동 사업을 위한 2026년도 계획안은 고독사 관리대상 8,522명 중 위험군 등 4,000명을 대상으로 ① AI기반 자동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② AI기반 안부확인 기기(문열림 센서 등) 이용, ③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용역비로 편성됨.

〈2026년도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억 5,2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52백만원 - 4,000명(독거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대상) × 11,500원(서비스 단가) × 12개월 = 552백만원 * 대상(4,000명): 관리대상 8,522명의 중 위험군 3,309명과 위험군 전환 인원 등 고려하여 산정 **단가(11,500원): 자동전화(3,300원) + 안부확인 기기(3,200원) +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5,000원)

(자료: 국가보훈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1년 4월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¹²⁶⁾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사업과 비교하여 타당성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부 고독사 예방 사업〉

구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법적 근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강명구의원) 계류중
관리 대상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군 선별	국가유공자 1인가구 취약계층 중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8,522명
지원 체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보훈부 본부 직접 사업 진행
사업 내용	①안부관리, ②생활 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사후관리 중 지자체 여건별 1개 이상 선택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자동전화 안부확인 + 안부확인 기기 이용 +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126) 일부 시·군·구('22년, 39개)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24.7월~, 229개)

□ 첫째,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관리대상을 ‘1인 가구 취약 계층 중 재가 복지서비스와 요양급여 미수혜자’로 명확히 선정하고 있는데, 보건 복지부 사업과의 사각지대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사업은 경제·고용 위기, 건강 취약, 주거취약 등 위험요 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복지부 권고안)’를 활용하여 위험군을 선별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 사업은 단순히 취약 계층 중 복지 서비스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1인 가구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적용 판단 방법〉

○ 고독사 위험자 발굴조사 시 고독사 위험자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판단도구**(복지부 권고안)*를 활용하여 결과가 **6점 이상인 경우 위험자로 판단**

* **(조사문항)** ①식사 빈도, ②음주 빈도, ③타인과의 소통 빈도, ④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⑤일정한 소득 유무, ⑥임대료·공과금 체납, ⑦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2점), ⑧청결유지, ⑨외로움(2점), ⑩자살 생각(2점) **총 10개 문항, 13점 만점**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사업 수행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본부가 직접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바, 계약 일정·방법 등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예산 확정 후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서

계약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가 각 지방 출동서비스 업체를 연계한다는 계획임. 세부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각 지방 출동서비스 업체 연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실시는 어려워 보이며, 보건복지부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신규 참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6개월분만 반영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업체가 변경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년도 계약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 중 ICT 활용 안부확인 사업과 유사한데, 고독한 임종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생전에 고독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이나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1)	안부확인	▪ (인적 자원망 활용)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ICT 활용)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2)	생활 개선 지원	▪ (환경 개선)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운영 ▪ (행태 개선)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3)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공간 운영) 고독사 위험군이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요리, 독서, 원예 등), 체육활동(걷기, 운동, 등산 등), 식사 및 다과모임 등
(4)	사후관리	▪ (유품정리·특수청소)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서 일반국민 대상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더욱 두텁게 추가 지원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관리대상 전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과 차별화된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과 달리 고독사 예방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렵고 부처 간 자료공유의 근거가 없어 협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고독사 현황 자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조127)에 따른 형사사법정보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신설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¹²⁸⁾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는 대부사업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위탁은행 계약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 보전, 채권회수업무 외부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의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억 4,300만원 (4.2%) 증가한 111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B-A)/A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17,368	10,657	11,100	443	4.2
- 이차보전금	17,280	10,547	10,893	346	3.2
- 채권회수업무위탁 수수료	88	110	110	-	-
- 주택지원시스템 운영	-	-	97	97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128)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2259-390~392)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은행 전용 상품(“나라사랑대출”)을 통한 위탁대부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보훈관서에서 직접대부를 지원하고 있음.

○ 위탁대부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개 은행과 대부업무 위탁협약¹²⁹⁾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되, 은행금리와 보훈금리의 차이만큼을 보훈기금으로 매월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 현황〉

구분	내용
목적	·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또는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배우자
종류	· 농토구입대부 ·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 · 사업대부 · 생활안정대부
방식	· <u>위탁대부</u> :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은행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이차보전 · <u>직접대부</u> :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대부 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부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이후 대부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이나,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증가('22년 77억 7,900만원 → '23년 108억 3,500만원 → '24년 172억 8,000만원)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대출잔액이 누적되고 있고, 시중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점에 기인함.

〈최근 위탁대부 규모 및 사업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월	2026년
인 원	22,742	25,145	23,907	17,504	
대부액	184,806	206,779	171,712	102,166	
이차보전금*	7,779	10,835	17,280	10,547	10,893

* 2022년~2024년 결산 기준, 2025년 및 2026년은 계획(계획안)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부)

〈연도별 대출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출채권 평균잔액	590,356	642,053	683,034
보훈금리	1.4~2.4	2.4~3.4	3.0~4.0
시중금리	(부동산) 2.55~5.21 (신용) 3.30~6.18	(부동산) 4.70~5.04 (신용) 5.19~5.75	(부동산) 4.53~4.94 (신용) 4.99~5.39
평균 이차보전을	1.34	1.69	2.53

(자료: 국가보훈부)

(1)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차보전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대출채권 잔액과 이차보전을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추계로 인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음.

○ 대출채권 잔액이 누적되고 있으나 최근 3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차보전은 최근 기준이 아닌 감축 적용하였음.

〈2026년도 이차보전금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획 액	산출내역
국가유공자대부관리	10,720	-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630,413백만원) × 이차보전을 감축 적용(1.7%)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96	-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6,115백만원) × 이차보전을 감축 적용(1.56%)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77	-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4,211백만원) × 이차보전을 감축 적용(1.83%)
합계	10,893	

(자료: 국가보훈부)

□ 계획액 대비 이차보전금 증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매년 이차보전금 변경이 반복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22년 47억 4,800만원 → '23년 61억 800만원 → '24년 67억 5,300만원).

<2022년~2025년 이차보전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변경 증액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계획액	변경액	계획현액
2022	국가유공자대부관리 (2259-390)	이차보전금 (320-05)	2,992	4,674	7,666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2259-391)	이차보전금 (320-05)	21	45	66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259-392)	이차보전금 (320-05)	18	29	47
	계		3,031	4,748	7,779
2023	국가유공자대부관리 (2259-390)	이차보전금 (320-05)	4,789	6,029	10,818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2259-391)	이차보전금 (320-05)	39	48	87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259-392)	이차보전금 (320-05)	29	31	60
	계		4,857	6,108	10,965
2024	국가유공자대부관리 (2259-390)	이차보전금 (320-05)	10,498	6,663	17,161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2259-391)	이차보전금 (320-05)	87	53	140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259-392)	이차보전금 (320-05)	72	37	109
	계		10,657	6,753	17,410

(자료: 국가보훈부)

- ☐ 동일한 사유로 매년 기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누적 해소 필요

□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도 부족하여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누적('22년 1억 2,600만원 → '23년 96억 8,000만원 → '24년 119억 6,900만원 → '25년 9월 118억 5,8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지급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는 것은 국가대부사업에 대한 민간은행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자 청구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누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월
계획액	3,031	4,727	10,527	10,547
변경액	4,748	6,108	6,753	-
계획현액	7,779	10,835	17,280	10,547
지급 의무(A)	7,831	20,389	19,569	10,436
지급액	7,779	10,835	17,280	10,547
당해연도 지급(B)	7,705	10,709	7,600	838
과거 미지급금	74	126	9,680	9,709
발생 미지급금 (A)-(B)	126	9,680	11,969	9,598
누적 미지급금	126	9,680	11,969	11,85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 및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이차보전금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위탁은행에 미지급한 이차보전

금의 차년도 이월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대부 한도액이 클수록 이차보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 한도액 축소, 적정 위탁대부 총량 설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미지급금 누적으로 인한 협약 재검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투입되는 재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나 대출 계약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집행 규모가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사업방식의 적정성, 지속가능한 운영 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누적 미지급금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Ⅳ.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1. 토지매각대¹³⁰⁾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토지매각대’ 사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수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700만원 증가(10.0%)한 33억 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토지매각대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계획안(B)		
토지매각대	1,795	3,072	1,975	3,379	307	10.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매각 부진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 필요 등

- 동 사업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에 따라 환수된 친일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동 법에 따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절차를 거치고 있음.

¹³⁰⁾ 세부사업; 토지매각대(72-721)

□ 친일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53억원을 정점으로 2023년부터는 매각대금이 20억원을 하회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각액이 100억원을 하회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3월 당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토지 140필지를 뽑아 목록을 공개하고 매수를 독려하는 등 대대적으로 친일 귀속재산 공매에 나섰고, 이에 2022년 153억원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2023년 9억원, 2024년 18억원, 2025년 9월 기준 4억원 등 매각실적이 매우 부진함.

- 매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활용도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토지는 일찍 매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캠프측은 ‘(최저입찰가를 결정하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음.¹³¹⁾

〈매각 실적〉

(단위: 억원)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필지	31	78	118	62	174	52	30	77	31	20	12	20	4	2	11	21	36	779
매각	26	80	67	55	142	18	91	56	86	12	4	61	7	150	8	23	11	897
수납	26	57	78	46	145	38	31	91	88	24	17	15	57	153	9	18	4	897

(자료: 국가보훈부)

131) 시사저널, ‘파묘’ 안 하고 몰수한 친일과 땅 600억...정작 유공자에겐 ‘그림의 떡’, 2024.3.15

□ 총 1,452필지의 친일 귀속 재산 중 779필지가 이미 매각되고 잔여 재산은 818필지임.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도로, 하천, 군부대 등 법령상 매각 제한 사유가 있는 매각제한 재산을 제외한 매각 가능 재산은 255필지로, 공시가는 85억원 정도임. 2025년 토지 공시지가율(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 평균치인 65.5%를 적용하면, 매각 가능 재산의 시세는 대략 130억원으로 추정됨.

〈국가보훈부 소관 잔여 친일 귀속 재산 현황〉

구분		계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합계	필지	818	365	107	286	60
	면적(천㎡)	6,359	407	30	5,852	70
	공시가(억원, %)	404(100)	61(15.1)	33(8.2)	299(74.0)	11(2.7)
매각 가능 재산	필지	255	136	15	87	17
	면적(천㎡)	970	203	2	711	54
	공시가(억원, %)	85(21.0)	24(28.2)	1(1.2)	56(65.9)	4(4.7)
매각 제한 재산*	필지	563	229	92	199	43
	면적(천㎡)	5,389	204	28	5,141	16
	공시가(억원, %)	319(79.0)	37(11.6)	32(10.0)	243(76.2)	7(2.2)

주: 2025년 9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현재 매각 가능 귀속재산은 캠프가 주기적으로 공매에 붙이고 있고, 매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등 국가보훈부와 캠프가 재산 매각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매각 부진을 반영하여 당초 국가보훈부가 요구한 수입계획액은 19억 7,5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 편성 논의 과정에서 2025년 계획액보다 10% 상승한 33억 7,900만원을 편성하

기로 확정되었는데, 2026년 계획액의 경우 최근의 매각 부진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부는 매각 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해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산지인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귀속재산의 대부계약 시에는 친일파 후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바, 매각 뿐만 아니라 대부 시에도 친일파 후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출]

1.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¹³²⁾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억 원(1.1%) 증가한 980억 9,700만원이 편성됨.

○ 내역사업인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억 300만원 증가한 929억 8,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B-A)/A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99,843	96,997	98,097	1,100	1.1
- (손)자녀 생활지원금	94,865	91,878	92,981	1,103	1.2

(자료: 국가보훈부)

¹³²⁾ 세부사업: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3141-401)

2) 검토의견

(1) 대상인원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¹³³⁾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계획액이 부족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일반회계전입금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매년 실집행액이 계획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의 낮은 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매년 실제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을 상회함.

○ 2021년부터 매년 계획인원이 지원인원보다 과소 계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5억원~83억원을 계획변경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2025년에도 7월말 기준 집행률은 61.5%에 달하며,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약 7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1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1	‘22	‘23	‘24	‘25. 7.
단 가	100~478천원				
계획액	79,534	87,849	91,878	91,878	91,878
(계획인원)	(18,766)	(20,535)	(21,186)	(21,186)	(21,186)
집행액	87,764	90,504	93,378	94,865	56,546
(집행인원)	(20,498)	(20,905)	(21,479)	(21,734)	(22,260)
집행률	110.3	103.0	101.6	103.3	61.5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 등으로 유족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계획안 편성 시 지원대상인원을 ‘2022~2024년 3년 평균 지원자 수(21,373명) 또는 2025년초 지원자 수(22,260명)’가 아닌 ‘2025년 계획안 편성계획인원(21,186명) 대비 1.1% 증가한 21,402명’를 적용하는 등 과소계상하였는바, 2026년 집행 시에도 기금 계획변경을 통해 부족액을 충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됨.

□ 국가보훈부는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 검토 필요

-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123개 과제와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단 1원의 인상도 없는 동결에 그침.
- 생활지원금은 2019년 최대 46.8만원에서 2025년 최대 47.8만원으로 1만원(2%) 인상에 그쳤으며, 2026년에도 2025년과 같은 금액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됨.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은 12.2% 상승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2019년 최대 51.2만 원에서 2025년 최대 76.5만 원으로 약 24.3만원(47.5%) 인상되었음.
-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생활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매년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 소요가 9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 여력이 부족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특성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26년 계획안에는 937억 5,4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고, 이 중 929억 8,100만원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에 쓰인다고 볼 수 있음. 2026년 계획액도 과소 계상되어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2026년 집행예상액은 1,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임.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규모*				손자녀 생활지원금집 행액**(B)	
	합계	자체수입	일반회계 전입금(A)	여유자금 회수		A/B
2017년	51,874	35,710	-	16,164	-	-
2018년	143,021	5,282	54,686	83,053	72,522	0.75
2019년	197,635	4,589	76,203	116,843	77,344	0.99
2020년	161,893	7,712	76,689	77,492	81,920	0.94
2021년	167,035	11,239	80,826	74,970	87,764	0.92
2022년	253,010	20,192	88,848	143,970	90,504	0.98
2023년	335,655	8,895	92,651	234,109	93,378	0.99
2024년	200,682	7,428	92,651	100,603	94,865	0.98
2025년	149,093	8,751	92,583	47,759	90,627	1.02
2026년	151,269	9,407	93,754	48,108	92,958	1.01

* 수입 규모: 2017~2024년 결산 기준, 2025~2026년 계획 기준

** 손자녀 생활지원금 계획액: 당초 계획액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소요 재원 전액이 사실상 일반회계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지출을 거쳐 집행되고 있는바,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요구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독립유공자 외의 유공자’의 지원 확대 요구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우려는 각 보훈대상자 간에 지원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함.
- 오히려, 동 사업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 인상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의 자체 수입 비중(최근 5년간 9.3%)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매년 사업의 계획액 또한 과소 편성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국회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¹³⁴⁾ 등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바,¹³⁵⁾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추가재정소요가 740억 4,700만원임. 지원 대상 확대의 경우를 대비하여서라도 동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134) 증손자녀의 자녀

135) 안규백의원안(제2202835호), 강준현의원안(제2208215호), 이병진의원안(제2208519호), 박용갑의원안(제2208598호) 등

